

제400회 국회
(정기회)

국회 본회의 의회 의록

제 11 호

국회 사무처

2022년10월27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

1.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79)
2.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64)
3.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67)
4.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43)
5.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03)
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7944)
7.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7948)
8.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7945)
9.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943)
10.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87)
11.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7947)
12.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2029)
13.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72)
14.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16)
15.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7946)
16.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7949)
17.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4536)
18.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77)
19. 향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71)
20.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14)
2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11)
2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77)
2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74)
24.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21)
25.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84)
26.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7942)
27.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901)
28. 청년 지원을 위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966)
29.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70)
30.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7943)

31.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7941)
3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24)
33.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13)
3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645)
3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71)
36.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47)
3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61)
38.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16)
3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08)
40.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35)
41.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38)
4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7939)
43.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7940)
4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7938)
45. 202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7929)

상정된 안건

- 비교섭단체(정의당) 대표발언 3
- 위문금 각출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2117956) 7
- 1.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79) 7
- 2.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64) 7
- 3.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67) 7
- 4.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43) ... 7
- 5.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03) 7
- 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7944) 7
- 7.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7948) 7
- 8.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7945) ... 7
- 9.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943) 7
- 10.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87) 9
- 11.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7947) 9
- 12.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2029) 9
- 13.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72) 9
- 14.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16) 9
- 15.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7946) 9
- 16.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7949) 9
- 17.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4536) 9
- 18.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77) 11
- 19. 향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71) 11
- 20.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14) 12
- 2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11) ... 12
- 2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77) ... 12
- 2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74)	12
24.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21)	12
25.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84)	12
26.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7942)	12
27.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901)	12
28. 청년 지원을 위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966)	12
29.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70)	12
30.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7943)	12
31.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7941)	12
3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24)	15
33.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13)	15
3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645)	15
3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71)	15
36.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47)	15
3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61)	15
38.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16)	15
3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08)	15
40.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35)	15
41.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38)	15
4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7939)	15
43.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7940)	15
4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7938)	15
45. 202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7929)	17
o 5분자유발언	17

(14시00분 개의)

○의장 김진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습니다.

○의사국장 정명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 의원 대표발의로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3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o 비교섭단체(정의당) 대표발언

(14시01분)

○의장 김진표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의원 사랑하는 동료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비대위원장 원내대표 이은주 의원입니다. 수원에서 세 모녀가 사망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같은 달 광주에서 보호종료청년이 생을 마감해 목숨을 끊었습니다. 신당역에서는 여성 노동자가 동료에게 스토킹 살해를 당했고 얼마 전 국내 최대 제빵업체에서 갓 스물을 넘긴 청년이 반죽기계에 몸이 끼어 숨졌습니다. 모두 두세 달

사이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마땅히 사회가 보호했어야 할 시민들입니다. 정치가 대안과 해법을 가져야 할 문제들이었습니다. 복지전달체계는 정작 약자들에게는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성들에게 스토킹의 끝은 죽음입니다. 30만 원짜리 안전센서를 붙이지 않아 사망재해가 발생했습니다. 희생자들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고장 났는지를 바로 자신의 죽음으로 고발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들은 더 이상 우리 정치의 작은 뉴스거리도 되지 않습니다. 잠시 관심을 갖는 척하지만 곧 집단적 기억상실에 걸리는 것이 오늘날 한국 정치입니다.

대신 우리 정치를 지배하고 있는 이슈는 친일과 대 주사파입니다. 제1야당 대표가 앞장서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친일국방이라 말씀하고 대통령이 직접 주사파 논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저는 묻습니다. 친일파와 주사파가 과연 현존하는 위협입니까? 친일국방 논란은 지난 정권의 죽창가처럼 외교안보 현안을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욕망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한일 방위협력은 윤석열 정부의 독자적 작품이 아니라 이미 역대 정권에서 조금씩 확대되어 왔습니다. 체제 경쟁은 진작에 끝났고 북한 체제를 대한민국에 이식하려는 집단을 시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주사파는 오직 우파 유투버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같은 집단에서만 존재하는 위협, 아니 망상일 뿐입니다.

정치가 가상의 공포를 앞세운 사이 복지체계의 공백, 직장 내 성폭력, 산업재해와 같은 우리 삶에 현존하는 위협은 무시되고 있습니다. 적대적 정치는 정치의 힘을 가장 필요로 하는 힘없는 약자들에게서 공공정책이 자신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기대를 빼앗고 있습니다. 적대적 정치는 사회의 평화를 부수고 시민들이 서로를 향해 고함치고 화내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자기 진영의 최대 결집을 위해 공동체의 안녕을 파괴하는 이런 정치는 나쁜 정치입니다. 아니, 정치도 아닙니다.

정치의 정상화, 정치의 부활이 절실합니다. 민주화 이후 거듭되는 정치의 실패를 극복하지 않고는 불평등과 기후위기, 차별과 혐오 같은 우리 삶과 지구공동체에 대한 위협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경제지표의 성장은 이뤘지만 사회는 저성장하고 국가는 풍요롭지만 시민의 가난한 상황을

극복할 힘은 오로지 정치에서 나옵니다. 지금은 나쁜 정치이지만 그렇기에 우리 사회의 다른 영역보다 더 나아질 여지가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적대적 정치를 끝내기 위해 정부, 여당 그리고 제1야당에게 진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대통령은 반민주적 의회 모독을 결자해지해야 합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라는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의 발언을 바로 눈앞에서 들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망언보다 더 심각했던 것은 주사파는 협치의 대상이 아니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전직 대통령이 김일성주의자고 야당 의원도 마찬가지로 의회와 정치를 모독하는 망언에 대통령은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그 해악은 김문수 위원장보다 더 큼니다.

방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설의 대상이 바이든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라면 정말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겁니까? 대통령 없는 민주주의는 있어도 의회 없는 민주주의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의 의회에 대한 적대감은 이전 정부들과 한 치도 다르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해결하십시오. 김문수 위원장 같은 극렬 인사를 사퇴시키고 자신의 실언에 대해 사과해야 합니다. 그래야 의회에서 여야 대화 복원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총선까지 아직도 2년이 남았고 이 내전 상태를 끌고 간다면 정부 실패는 예견돼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둘째, 사정기관을 앞세운 통치를 중단해야 합니다.

내 사전에 정치보복은 없다던 대통령의 공약은 결국 식언이 됐습니다. 검찰은 제1야당 대표를 정조준하고 있으며 감사원은 전임 정부의 각료 전체를 감옥에 보낼 태세입니다. 잘못했다면 처벌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통치자에게 주어진 그 무서운 권한은 마땅히 절제라는 덕목 속에 행사되어야 합니다. 정치적 반대파에 대한 무자비한 사정은 단 한 번도 통치의 성공을 가져온 바 없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이들마저 용서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왜 지금까지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억되겠습니까?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사정통치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독립적 기관인 감사원은 어느새 대통령실에 문자를 보내고 직보를 하는 기관으로 전락했습니다. 내부 절차를 어긴 감사는 물론이며 탈원전에 이어 소득주도성장까지 전임 정부의 정책 전체를 범죄화하려는 욕망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믿는 시민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전임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심판은 선거에 참여하는 시민의 평가에 맡겨 두어야 합니다. 폭주하는 사정기관을 제어하지 않는다면 5년 뒤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그것은 한 정치집단의 불행이 아니라 우리 정치 전체의 불행입니다. 이 악순환을 끊는 결단을 내리십시오.

셋째, 제1야당에도 말씀드립니다.

특검 국회를 민생 국회로 전환합시다. 이번 주 민주당사가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정국은 급속히 냉각됐습니다. 대부분의 국정감사는 중단되고 대통령 시정연설은 반쪽이 됐습니다.

대선자금 문제로 야당 대표가 수사선상에 오르는 불행한 사태가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뗏목하라는 이재명 대표의 말씀을 신뢰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가혹한 자들에게 수사를 맡기고 결백을 증명하는 정공법을 택해야 합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특검에 대한 찬반 문제로 정기국회가 파행되는 것입니다. 제1야당 주도의 특검법 발의는 국회의 기능 정지를 불러올 것입니다. 정의당은 검찰 수사와 공소장을 지켜보고 특검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특검보다 훨씬 더 절실한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각지대 없는 온전한 손실보상, 기초연금 인상,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스톱지원센터 같은 이재명 대표께서 말씀하신 과제들을 정기국회에서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이 정치의 블랙홀이 되는 일이 없도록 재고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식 연설에서 자유를 서른다섯 번 언급했습니다. 주요 행사에서 자유를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유는 보수만의 가치가 아니라 진보에게도 핵심 가치입니다. 다만 지금 우리 사회에 어떠한 자유가 더 중요한지에 대해 견해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2차 대전 참전을 앞두고 의회에서 ‘네 가지 자유’라는 명연설을 했습니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결핍

으로부터의 자유, 전쟁이라는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본질적인 자유라고 말했습니다. 자유시장이나 국가나 군주의 억압이 없는 것 같은 소극적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대공황과 빈곤, 불평등으로부터 시민을 자유롭게 하자는 적극적 자유였습니다.

루스벨트 정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결사의 자유를 선택했습니다. 미국 최초의 여성 장관인 프랜시스 퍼킨스 노동부장관을 임명해 전국노동관계법을 비롯한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노동자의 단결권을 강화하고 쟁의행위에 대한 민사면책을 신설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처벌했습니다.

그리고 결사의 자유 확대는 루스벨트 정부만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파시즘 격퇴를 막 앞둔 1944년 필라델피아에서 ILO는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는 지속적 진보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라고 선언했습니다.

인류는 결사의 자유를 핵심적 자유권으로 인정하면서 비로소 야만과 결별했던 것입니다. 우파는 착취를 포기하고 좌파는 폭력혁명을 포기하는 타협과 정당과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합의로 현대 민주주의는 번영과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현대 민주주의를 탄생시킨 이 위대한 결사의 자유는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철저히 부정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14년간 쟁의행위로 노동조합과 개인에게 청구된 손해배상금액은 2753억원입니다. 최근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에 대한 470억원 손해처럼 몇십 년, 아니 몇백 년이 지나도 갚지 못할 금액이 청구되고 있습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의 희생이 입증했듯 그 고통은 죽기 전에는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사용자 측의 손해소 취하는 노조탈퇴, 희망퇴직,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철회 같은 부당노동행위로 이어져 우리 헌법 33조의 노동삼권을 부정하는 사례가, 거래가 되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손해 노동자가 불쌍해서 연민하기 위해 만든 법이 결코 아닙니다. 헌법상의 기본권이며 인류가 이룩한 결사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대통령 거부권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는 자유에 대한 거부입니다. 거부권 행사는 대한민국을 영원히 자유의 사각지대이자 반문명국가로 남겨두게 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노란봉투법을 입법

하는 옐로우 윈터(Yellow Winter)로 만들 것입니다. 당원들은 거리에서 시민들과 캠페인을 펼칠 것입니다. 의원단은 국회에서 온 힘을 다해 노란 봉투법의 필요성을 동료 의원 여러분과 논쟁하고 토론해 합의점을 만들 것입니다.

이번 정기국회를 결사의 자유라는 우리 헌법의 약속을 실현하는 국회로 함께 만듭시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와 지정학적 위기가 복합된 위기로 약자의 삶이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기록적 폭우로 반지하방 주거약자들이 희생돼 기후위기가 가난한 사람들을 가장 먼저 위협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해처럼 일상이 된 젠더 폭력과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증오와 혐오를 끝내지 않으면 일상의 평화와 사회의 통합은 불가능합니다.

약자를 위한 정기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동자·무주택자·자영업자 권익 강화’ ‘기후위기 대응’, ‘차별·폭력, 증오의 정치를 넘기 위한 정치개혁, 사회개혁’이라는 3대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일하는 시민 기본법으로 플랫폼, 프리랜서, 자영업자 같은 모든 일하는 시민의 기본권과 단결권을 보장하겠습니다.

SPC그룹 허영인 회장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성사시켜 청년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사과와 방지책을 받아 내겠습니다. CEO 처벌 조항 삭제 등으로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중대재해법을 폐지하려는 시도를 단호히 막겠습니다.

반지하 비극을 막기 위해 주거복지를 강화하는 주거기본법과 주거급여법을 개정하고 다중채무자와 같은 금융약자를 위한 정책금융을 확대하며 개인회생·파산제도는 정비하겠습니다.

쌀 생산에 들어가는 주요 농자재 비용과 인건비가 천정부지로 올라 농사를 열심히 지으면 지을수록 손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동시장격리를 의무화하고 시장격리 시 역공매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양곡관리법을 개정하고 농민의 노동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의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과 일자리전환사업을 철저히 점검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의로운 일자리전환 기본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의로운 전환의 비용을 마련할 탄소세를 도입하고 배달라이더 전기이륜차 지원 강화 등 일상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도 빼놓지 않

을 것입니다.

피해자 신변보호 등 스토킹 처벌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저항이 불가능한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만 강간이라는 최협의설에 간혀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형법의 강간죄를 개정하고 비동의강간죄를 도입하겠습니다.

차별금지법으로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차별과 혐오를 막고 모든 시민이 존엄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2023년 예산은 건전예산이 아닙니다. 공공축소 민자 퍼주기 예산입니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보다 재정의 역할을 축소하고 시장으로 기능을 이전하려는 불건전한 의도가 다분합니다.

또한 이번 예산은 부자감세·민생삭감 예산입니다. 법인세 인하, 가업상속공제 기준 완화로 부의 대물림을 안정적으로 보장했습니다. 부자감세안을 밀어붙인다면 그 결과는 최근 영국과 같은 파국이 될 것입니다. 부자감세는 지방교부세 교부액을 감소시켜 지방재정 또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약자복지를 강조했지만 사회안전망 구축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각각 31조 6000억과 26조 6000억을 편성해 전년보다 4조 2000억, 3조 4000억만 증액됐습니다. 사실상 자연증액분 수준으로 생색이나 다름없습니다.

기후인지예산은 10조 원 정도로 유엔이 제시한 기후예산 GDP의 2%, 40조 원의 4분의 1 수준이며 대한민국을 영원히 기후악당국가로 남게 할 것입니다.

정부의 예산안을 결코 이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는 것이 정의당의 입장입니다. 향후 예산심의 과정에서 문제점을 철저히 따져 묻고 약자를 위한 공공의 기능을 복원하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을 회복시킬 것을 약속드립니다.

사랑하는 동료시민 여러분!

정의당은 내일 7기 대표단 선출을 완료하고 5개월간의 비상대책위원회도 막을 내립니다. 저도 이제 원내대표로 돌아옵니다. 그간 정의당 10년평가위원회를 통해 당의 노선과 조직·재정, 총선 전략을 진단했습니다.

리더십 강화를 위해 당대표 중심의 단일지도체제로 개편하고 노선과 정체성에 대한 전면 혁신을 결의한 재창당 방침이 당대회에서 확정됐습니

다. 일하는 사람들과 약자들의 삶 속에서 정의당의 새로운 노선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발달장애인 가족의 참사를 끝내기 위한 활동지원 서비스와 다양한 지원체계를 약속드렸습니다. 배달 라이더 노동자들의 안전배달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TF를 함께 구성해 논의를 이어 오고 있습니다.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에 함께한 과정은 정의당의 존재 이유와 가능성을 확인한 과정이었습니다.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다른 정치 이슈들로 인해 이번 정의당의 당직선거는 크게 부각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위한 임금체계 논쟁을 비롯해서 양대 정당에서도 해 보지 못한 당내 토론이 치열하게 펼쳐졌습니다. 혼돈의 정치노선을 정비하면서도 새로운 연합정치의 원칙을 찾기 위한 사려 깊은 논의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직까지 진보정치의 가능성을 신뢰하는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물론 정의당의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을 완수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내일 선출되는 신임 지도부와 함께 저 또한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정의당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진보정치를 가장 필요로 하지만 정의당을 아직 경험하지도 알지도 못하는 분들에게 향하겠습니다. 그럴 때 진보정치의 가능성은 현실이 되고 정의당은 거대 양당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의당의 앞길에 많은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의장 김진표 이은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문금 각출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2117956)
(14시20분)

○의장 김진표 다음은 위문금 각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매년 연말이면 국군장병, 의무경찰 등을 격려하고 그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서 국회 차원에서 약간의 위문금을 모금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도 의원 여러분의 11월분 수당에서 0.5% 상당액을 위문금으로 각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79)
2.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64)
3.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67)
4.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43)
5.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03)
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7944)
7.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7948)
8.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7945)
9.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943)

(14시21분)

○의장 김진표 의사일정 제1항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9항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9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이성만 위원 나오셔서 9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장대리 이성만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 부평갑을 지역구로 둔 행정안전위원회 이성만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병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에 금리인하요구권을 도입하고 요구권을 미고지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중앙회의 금리인하요구 대상을 회원뿐만 아니라 회원 이외의 계약당사자도 포괄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온천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시기를 10년으로 명시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부칙을 추가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범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자정부서비스 통합·폐기 등 개선 권고를 받은 기관이 30일 이내에 개선방안을 수립·제출하도록 하는 등 중앙사무관 장기관 권고의 집행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으로 일부 자구를 정리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에 대한 실태조사와 활성화에 관한 연구사업 수행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실태조사 관련 일부 자구를 정리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주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3명 이상인 행정사합동사무소 설치요건을 다른 국가자격과 동일하게 2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행정재산을 제삼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사용·수익’으로 개정하여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등 그 범위와 뜻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섬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수행을 위하여 관리·사용하는 선박을 이용하여 주민을 운송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였을 때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보고’ 대신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위원회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되 개정안 제출 이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해 지방재정투자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개정된 점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

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김진표 이성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33인 중 찬성 231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39인 중 찬성 235인, 기권 4인으로서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39인 중 찬성 235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7인 중 찬성 209인, 반대 10인, 기권 18인으로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8인 중 찬성 234인, 기권 4인으로서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5인 중 찬성 231인, 기권 4인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6인 중 찬성 234인, 기권 2인으로서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8인 중 찬성 236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3인 중 찬성 230인,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87)

11.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7947)

12.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2029)

13.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72)

14.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16)

15.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7946)

16.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7949)

17.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4536)

(14시33분)

○의장 김진표 의사일정 제10항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8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봉민 위원 나오셔서 8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장대리 전봉민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 수영구 출신 행정안전위원회 전봉민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09년 2월 이전에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소유 재산을 등록해 오던 기혼 여성 등록의무자로부터 본인의 직계존비속 재산을 등록하도록 관련 부칙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공무상 재해보험물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훈련비 반납과 관련한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고 본인이 반납하지 않을 경우 그의 보증인에게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특례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1명을 상임화하고 사무국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황운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원경찰의 당연퇴직 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의 경우 신청기간 내에 면책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로 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지막으로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김진표 전봉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25인 중 찬성 221인, 기권 4인으로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20인 중 찬성 219인, 기권 1인으로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26인 중 찬성 225인, 기권 1인으로서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19인 중 찬성 202인, 반대 3인, 기권 14인으로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05인, 반대 3인, 기권 16인으로서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219인, 기권 7인으로서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222인, 기권 1인으로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7인 중 찬성 223인, 기권 4인으로서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8.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77)

19. 향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71)

(14시43분)

○의장 김진표 의사일정 제18항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9항 향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주철현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대리 주철현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여수시갑 지역 주철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박람회 시설 사후활용 사업 등의 시행 주체를 2012 여수세계박람회재단에서 공공기관인 여수광양향만공사로 변경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박람회 개최 성과를 계승·기념하고 박람회 사후활용 관련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해수부장관이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미리 협의한 후 박람회 사후활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또 부칙으로 재단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여수광양향만공사가 포괄 승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향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향만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여수세계박람회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박람회 개최 성과를 계승·기념하고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사업을 추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 법률안 2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김진표 주철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194인, 반대 3인, 기권 18인으로서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196인, 반대 4인, 기권 17인으로서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0.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14)

2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11)

2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77)

2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74)

24.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21)

25.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84)

26.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7942)

27.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901)

28. 청년 지원을 위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966)

29.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70)

30.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7943)

31.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7941)(14시47분)

○의장 김진표 의사일정 제20항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1항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12건을 상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신영대 위원 나오셔서 1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대리 신영대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영대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1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권명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문무역상사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절차를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원금을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특별회계 설치를 의무사항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9월 14일을 산업단지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일부 조문체계를 정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최형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위임 대상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양이원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유무역지역 내 보세운송 신고의무 등을 과실로 위반한 경우에 벌칙을 현행 1000만 원 이하에서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감경하는 것으

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 용역에 분리발주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법률의 명확성 및 구체성을 위해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방향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윤한홍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를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확히 하고 수리 간주제를 도입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이용요금 설정·변경 신고를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확히 하고 수리 간주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청년 지원을 위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뿌리산업 인력 실태조사 및 중소기업 시책에 청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또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사업전환을 하려는 중소기업의 전환계획을 우선 승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우선 승인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구체화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정만 의원, 한무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조합원 및 이사에겐 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의결권과 선거권 행사를 허용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보고사항을 간소화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이주환 의원, 우원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사범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맞추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단속사무 지원 업무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김진표 신영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6인 중 찬성 206인으로서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13인 중 찬성 212인, 기권 1인으로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12인 중 찬성 201인, 반대 1인, 기권 10인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20인 중 찬성 216인, 기권 4인으로서 신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194인, 반대 3인, 기권 20인으로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197인, 반대 1인, 기권 15인으로서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215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211인, 반대 2인, 기권 2인

으로서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청년 지원을 위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15인, 기권 1인으로서 청년 지원을 위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10인, 기권 6인으로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15인, 기권 1인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15인 중 찬성 215인으로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4324)
33.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13)
3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645)
3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71)
36.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0547)
3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61)
38.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16)
3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08)
40.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35)
41.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38)
4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7939)
43.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의안번호 2117940)
4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7938)

(15시02분)

○의장 김진표 의사일정 제32항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44항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13건을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박상혁 위원 나오셔서 1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위원장대리 박상혁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13건의 법률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축물 용도를 분류함에 있어 ‘교정 및 군사 시설’을 교정시설과 국방·군사시설로 구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최형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별자치시장이 시·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공공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현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드론 사고 및 보험 정보, 드론의 기체 신고, 사업체 등록 정보 등을 통합 관리하는 드론 정보 체계의 구축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홍기원 의원, 윤준병 의원, 정찬민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자의 말소등록 자동차 수출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는 한편 침수 전손 처리된 자동차의 수출 금지 규정을 명시하고 자동차 정비 중 일시적인 번호판의 탈착을 허용하며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자의 허위 점검 금지 및 교육이수 등 준수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김진표 박상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2인 중 찬성 200인, 기권 2인으로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4인 중 찬성 200인, 기권 4인으로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6인 중 찬성 203인, 기권 3인으로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6인 중 찬성 206인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6인 중 찬성 200인, 기권 6인으로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4인 중 찬성 196인, 기권 8인으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5인 중 찬성 202인, 기권 3인으로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0인 중 찬성 193인, 기권 7인으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0인 중 찬성 195인, 반대 2인, 기권 3인으로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195인, 반대 2인, 기권 3인으로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201인, 기권 1인으로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189인, 반대 1인, 기권 11인으로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3인 중 찬성 202인, 기권 1인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5. 202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7929)

(15시16분)

○의장 김진표 의사일정 제45항 2021년도 국정

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보고한 202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임위원장의 구두보고는 관례에 따라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2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정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방금 채택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가운데 정부측에서 시정하거나 처리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하여 그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

(15시17분)

○의장 김진표 다음은 다섯 분의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강민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정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민정입니다.

바야흐로 퇴행의 시대입니다. 요즘 우리는 가히 전방위적 퇴행을 곳곳에서 목도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교육 분야 인사와 예산을 보면 그렇습니다.

김영삼·이명박 정부를 거치며 대학설립 준칙주의 도입으로 부실대학이, 고교 다양화 정책으로 특권학교가, 일제고사 전면화로 무한경쟁체제가 들어서게 한 사람, 누구일까요?

윤석열 정부 세 번째 교육부장관후보 이주호입니다. 그런 그가 반성은커녕 다시 교육계 수장이 되겠다고 돌아왔습니다.

박근혜 후보를 선덕여왕이라 칭송하고 국가가 정한 단 하나의 역사만을 가르쳐야 한다며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앞장서 나라 전체를 혼란과 갈등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한 인물, 누구일까요?

초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이배용입니다. 이런 사람이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논쟁적 교육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까요? 통탄할 일입니다.

교육은 미래를 키우는 일입니다. 앞으로 가도 부족할 판에 오히려 과거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설상가상 이들은 이제 아이들 교육을 위한 예산 일부를 떼어 대학 예산으로 돌리자는 주장까지 합니다. 고등교육 위기에 대한 제대로 된 진단도 처방도 없이 가장 손쉬운 방법을 택하려 하고 있습니다. 아우 돈 떼어 형 주는 방식은 고등교육 문제 해결은커녕 초·중등 교육마저 위기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아파트도 30년이면 재건축 대상이 됩니다. 이들은 40년 이상 된 노후 학교건물이 1만 동이 넘고 지진 대비가 안 된 학교가 전체 43%를 넘어선다는 사실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발암물질이 나오는 석면 교실, 쪼그려 앉아야 하는 변기를 가진, 사용하는 학교들이 여전히 많다는 사실도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기회 있을 때마다 미래 교육, 맞춤형 교육을 이야기하면서 과밀학급, 과대 학교에다 늘어나는 학급 수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교사 정원부터 3000명이나 감축하고 있으니 할 말을 잃게 합니다. 교육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1교실 다교사제 도입은커녕 고교학점제처럼 이미 준비하고 시행 중인 교육개혁마저 흔들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인과 본인 자녀들은 석면과 지진 대책도 없는 40년 이상 된 노후건물에서 지내도 괜찮습니까? 또 학생 수가 줄어 교육예산 줄여야 한다는 논리라면 최근 10년간 입영한 현역병 수가 27만 4000명에서 15만 4000명으로 절반가량 줄어들었으니 국방예산 절반으로 삭감하자면 동의하시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수가 줄어들면 들수록 그 소중함은 몇 배 더 커집니다. 그래서 더 많은 지원과 정책이 뒤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유·초·중 교육예산 감축을 논하는 것과 달리 OECD 선진국들은 코로나로 취약해진 아이들을 위한 예산 등을 포함해 반대로 교육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당장 손에 잡히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초·중등학생들은 투표권이 없다는 이유로 아이들에게 써야 할 예산을 함부로 잘라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이들로 교육 분야 인적 쇄신도 다시 해야 합니다.

충분히 지지받고 자란 아이들이 우리 사회를 잘 지탱하고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어려워진 대학 재정 문제는 별도의 대학 재정 확충으로 풀어야 합니다. 그래야 유·초·중 교육도, 고등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저야 할 책임을 어린아이들에게 떠넘기는 식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고등교육 전용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표 강민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포천·가평 출신의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식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포천시가평군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기획되고 조작된 고 이대준 씨의 자진 월북 논란을 보며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정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가를 위해 일해 온 우리 정부의 공무원을 한순간에 자진 월북자로 몰아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수사가 완료된 것도 아니고 자진 월북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발견된 것도 아니고 사고 발생 직후 고작 8일이 안 된 시점에서 자진 월북이라고 판단 후 대국민 기획·조작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자국의 국민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내버리는 정부가 과연 국민을 위한 정부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권이 주장한 자진 월북의 입증 증거가 부족하다,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명확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진 월북했다는 논리를 보면 고 이대준 씨가 당시 그 차가운 21℃ 수온의 바다에서 40시간 가까이 표류하면서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제가 고 이대준 씨가 2020년 9월 20일 실종된 후 3일 후에 작성된 동료 선원의 진술조서를 입수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깐 고 이대준 씨는 생전에 동료들에게 ‘바다에 빠지면 저체온증으로 3시간 내로 죽는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해당 동료는 ‘대준 형님이 북한으로 갈 이유도 없고 월북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21℃의 수온에서는 통상 3시간 정도 버틸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생존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과학적인 근거로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이대준 씨가 바다에서 40시간을 버틸 수 없고 3시간 이내에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진해서 월북했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지만 설령 40시간을 버텼다고 해도 구명조끼를 켜면 파도에 따른 저항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대로 수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하에서는 남서쪽 해류 방향을 역행해서 그 먼 거리 38km를 거슬러 북쪽으로 절대 올라갈 수 없습니다. 모든 상황이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건 말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지난 24일 구속되어 있는 서훈 전 국방부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을 구치소에서 불러 첫 조사를 했습니다. 두 사람이 다 자진 월북의 배후로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가안보실 직제 제2조를 보면 ‘국가안보실은 국가안보에 관한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규정 3조를 보면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가안보실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의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바로 문재인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규정이 저렇게 되어 있는데 서훈 전 안보실장이 마음대로 자진 월북 지침을 내릴 수는 없는 겁니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최근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서면질문지를 보냈는데 서면조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현행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를 받는 자는 조서를 반드시 감사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것은 의무사항입니다. 이걸 어길 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는 이 문제로 야기되는 사회적 분란과 갈등 그리고 의혹을 해소해야 합니다. 진실을 밝혀서 고인의 유족과 고인에게 명예를 되살려 주고 우리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된 국정운영으로 나

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발판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진 월북을 주장하는 문재인 정권은, 당시 문재인 정권의 관련자들에 대해 신속하고 명확한 수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표 최춘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금천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상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금천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입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위기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검찰독재로 정치가 사라지고 폭력적인 지배만 남았습니다. 정치는 국민의 현재 삶을 살뜰히 챙기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미래의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민생과 경제에 대한 거대한 태풍이 몰려오는 이 시점에도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삶과 미래에 대한 희망은 안중에도 없어 보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무능한 경제 역량은 경제참사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사상 초유의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고통받고 무섭게 치솟는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살던 집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이 걸린 외교 현장에서 대통령의 발언은 국내외에서 여러 논란을 일으키며 외교참사로 번졌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강대강 대북정책 기조에 따른 우리 군의 미사일 발사 대응은 오히려 우리 영토에 낙탄으로 떨어지는 안보참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제참사, 안보참사, 외교참사에도 윤석열 정권은 여전히 전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과 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탄압에 국가 역량을 소진하고 있습니다. 전 정부의 정책결정이나 위기관리 대응과 관련하여 한낱 감사기관, 수사기관들의 시각만 과도하게 들이대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전 정부 인사에 대한 묻지마 수사 의뢰원이 되어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에 이어 국민권익위원장의 검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은 실체적 진실이 외면된 채 관련 사실이 자의적·선택적으로 짜 맞춰지면서 사건이 왜곡되고 있습니다.

전 정부 주요 인사들이 국무위원으로서 중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국민을 위해 혼신을 다한 일생이 부정당하고 수사에 의해 명예가 실추되며

갖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했던 일들이 정권교체 이후에는 마치 악의를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매도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이후 다음 정부에서도 이런 일이 또다시 반복되는 것을 원하십니까?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등과 관련하여 감사원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에게 책임을 묻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의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협치의 대상인 야당에도 무자비한 정치탄압으로 정치검찰을 앞세웠습니다. 지금은 정치권이 서로 협력하여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엄중한 시기에도 제1야당을 억압하고 폭력적으로 말살하려 합니다. 우리 헌정사에서 유례가 없는 국정감사 기간 제1야당 당사 압수수색, 시정연설 전날 야당 당사 재침탈은 국회의 상호 존중과 협치를 부정하는 모습입니다.

국민의 삶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완성되려면 권력을 가진 정부에 대한 야당의 건강한 견제가 필요합니다. 야당 탄압은 정당제도를 부정하고 헌법기관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헌법 유린입니다.

민주공화국에서 다양한 의견의 표출은 장려되어야 하고 반대의견도 실질적으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여러 의견에 대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새로운 결정을 함으로써 우리 공동체가 발전하고 나아지는 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이며 정치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며 부정되어서 우리 정치사의 시계를 암울했던 예전으로 되돌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들도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62%가 윤석열 정부가 법치를 잘못하고 있다고 여론조사를 통해 평가하고 있으며 검찰 조사 신뢰도도 절반 이상인 57%가 신뢰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묻고 싶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는 잘못된 방향을 향해 가혹하고 비정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민주공화국을 위해 비상 브레이크를 당겨야 할 때입니다. 아직은 대통령이 당길 기회가 있습니다.

5100만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논의되는 정치의 영역이 권력의 입맛에 맞는 수사기관의 관점으로 재단·매도되는 일을 당장 끝내야 합니다. 그리

고 지금 상황 전반에 대한 대통령의 반성과 성찰, 사과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바로잡으실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어떻게 지금의 나라를 만들어 오셨는지를 꼭 되새겨 보십시오. 국민들이 피땀 흘려 이뤄 온 민주주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나아가 민주를 넘어 모두 함께 잘사는 공생·공존·공화의 나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표 최기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최승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재 의원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승재 의원입니다.

지난 5년은 문자 그대로 민주당의 시간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역사상 180석이라는 거대 여당의 지위와 함께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힘은 오로지 국민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었고 권력에 따른 책임감 또한 무한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의회 다수권력으로 민주당은 주장해 왔던 모든 정책들을 강력하게 추진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에 다시 없을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른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도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문제를 키운 결과는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지난 5년간 침체된 경제와 1000조라는 나랏빚이라는 심각한 후유증을 낳았습니다. 그 힘이 올바르게 사용됐을 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방역에 협조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조차도 정략적으로 이용한 야당은 국가의 책무와 법적 책임은 망각하고 무책임한 공약과 기준 없는 현금 살포로 재정건정성도 지키지 못하고 수많은 자영업자만 폐업과 위기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습니다.

입법권력의 칼을 이용해 마구잡이식의 식목으로 도리어 숲이 훼손되고 생태계마저 파괴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매점매석식 입법활동은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의구심과 더불어 네 편 내 편이라는 이분법적 태도로 극심한 분열과 악순환의 수레바퀴를 만들고야 말았습니다.

이제 다시금 민주당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과거를 한번 돌아보고 헌법기관으로서 행정부에 대한 제대로 된 견제로 민생을 챙기고 국익을 우선하는 입법부 본연의 모습을 되찾아야 합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여야 협치라는 공동체 의식의 작은 국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으며 위기 탈출의 힘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의 민생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입법부가 적극 나서 정책을 보완하고 법률적 기반의 예산을 편성·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여야 협치는 공동체 의식을 부활시키고 국민을 위하는 길이기예 예산과 법률 등 입법부 본연의 임무로 우리 국회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우리는 또다시 큰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이 결코 끝이 아닙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에 대한 철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데 국회의 기능은 완전히 대결과 반목으로 실종된 상태입니다.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거대 야당의 책임감 있는 모습은 없고 여당 또한 포용력이 부족하게 비쳐지는 것도 현실입니다.

현재 라이언 일병을 구한다는 잘못된 카르텔로 대한민국의 미래와 약자들의 희망이 좌초되어 가고 있습니다. 설사 당대표에 대한 보호와 억울함을 강조하고 단결을 이끌어 내자는 조직문화의 전형이라 할지라도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 대한 교훈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리 국가에 대한 충성한 일족을 보호하여 무사히 집에 돌려보낸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희생에 대한 허구성과 주변 환경이 본질을 억압하고 훼손하는 우를 경계하자는 것이 진짜 교훈일 것입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며 당대표를 지키는 과정에서 급기야는 국회 본연의 업무인 국정감사조차도 소홀히 다루어졌습니다. 이는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저항이며 국회 우선의 권위로 국민을 주변인으로 전락시키고 의회가 실종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하니 국회가 점점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고 국회를 싸움판으로 보는 인식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정치가 실종되고 민생이 상실되고 국익이 훼손되었다는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국회는 국회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여야가 힘을 합쳐 비록 정책 대결을 하

지만 국익에서는 대동단결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 주며 누가누가 더 잘하나의 진정한 경쟁 모드로 가야 합니다. 국민을 힘들게 하는 것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또한 국민들이 선출한 행정의 총책임자이고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이니만큼 비록 총력적인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고 소수 의석이 뒷받침하여 힘에 부친다 하더라도 국민을 위하는 그 책임은 막강하기에 당당하게 포용력으로 오직 국익만을 위한다는 대의로 국회 정상화를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국익과 국민 앞에서는 그 어떤 명분도 앞설 수 없다 할 것입니다. 혼돈과 혼란 속에서 그 원인과 책임을 떠나 국민의 대통령으로서 무한책임지는 자세로 속상함에 대한 표시보다 국회에 대하여 위로와 유감을 표명하시는 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과거를 단절시키고 새로운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국익 우선, 국민 행복을 추구하는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내는 주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입법부와 행정부는 국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았기에 국민을 불안하게 하거나 행복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일체의 행위를 금해야 합니다. 오로지 국민을 위하여 여야가 경쟁하지만 국익을 우선하는 모습으로 함께 가야 할 동반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표 최승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류호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정 의원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류호정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집권 첫째 국정감사가 끝났습니다.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정부 대책을 촉구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의 질의가 좋았습니다. 강통전세 세입자 보호를 주문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질의도 기억에 남습니다. 가장 빛난 감사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었습니다. 이제는 대형 로펌 출신의 변호사가 법관으로 후관을

예우받는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번 국감의 시작부터 끝까지 언론의 헤드라인은 온통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쟁이었고 대미를 장식한 건 지라시 수준의 제보를 여과 없이 질의하는 국회의원과 ‘너는 무엇을 걸래?’를 시전하는 국무위원의 모습이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더 부끄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본회의장 연단에 선 이유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엇그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왔습니다. 정부가 편성한 2023년 예산안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윤 대통령께서는 걱정이 많습니다. 국회에서 여기 있는 우리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창피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았습다. 대통령의 사과가 없기 때문이라는데 자당 대표에 대한 수사 개시에 관한 사과인지, 자당 당사에 대한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관한 사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의당은 본회의장을 지켰습니다. 사전 환담에서 대통령에게 ‘우리 국회와 국민을 모욕한 이 xx 실언을 사과하라’ 분명히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래도 대통령이고, 그래도 예산 시정연설이기에 지켰습니다. 다만 최소한의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민생 예산을 확충하라’는 피켓, ‘이 xx를 사과하라’는 피켓을 자리에 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시비가 시작됐습니다. ‘야, 정의당! 웬만큼 해라’ ‘예의를 지켜라’ 고성이 들려왔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여러분, 여러분 탓은 없겠습니까? 여러분의 피의 실드가 언제부터였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윤 대통령이 기차에서 구두발을 좌석 위에 올려 둔 사진이 문제가 되자 다리 경련으로 해명했습니다. 윤 대통령 손바닥에 그린 왕(王) 자는 이웃 주민이 그려 준 것인데 세정제로도 지워지지 않았다고 변명했습니다. 윤 대통령 SNS에 올린 토리에게 준 사과는 유년 시절의 추억이라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래도 되나 싶었을 겁니다. 대선과 지선에서 압승하니 이제는 이래도 되네가 됐겠지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시민들께서 보고 있

습니다.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을 심판한 시민이고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을 심판한 시민입니다.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낮은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한 윤 대통령의 인터뷰에서 페미니스트가 겁이 나니 국민의힘은 행정상 실수로 전달된 축약본이라 둘러댔습니다. 이에 워싱턴포스트는 아예 원문을 공개합니다. 원문에는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정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여론이 형성되는 과정도, 언론의 지형도 바뀌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위상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외신은 우리 정치에 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맥락을 정확히 짚어 세계에 보도합니다. 대통령이 외교 무대에서 환대받지 못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대통령은 결국 국회와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사과하면 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얼렁뚱땅 대충 수습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선거가 아직 멀었기 때문에 주권자인 시민보다는 공천권자인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게 더 중요한 모양입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국회에서 5분의 시간을 받아 그들의 그동안을 기록해 둡니다.

엇그제 있었던 반쪽짜리 시정연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거짓말해도 혼나지 않고 잘못해도 사과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잘못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거짓말과 잘못은 국정과 국격의 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표 류호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33인)

찬성 의원(231인)

강 대 식	강 득 구	강 민 국	강 민 정
강 병 원	강 선 우	강 은 미	강 훈 식
고 민 정	고 용 진	구 자 근	권 명 호

권성동	권인숙	권칠승	기동민
김경만	김교홍	김기현	김남국
김도읍	김민기	김민석	김민철
김병기	김병욱	김병주	김상훈
김상희	김선교	김성원	김성주
김성환	김수홍	김승남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선	김영진
김영호	김예지	김용민	김용관
김웅	김원이	김윤덕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진표	김철민
김학용	김한규	김한정	김형동
김홍걸	김회재	김희곤	김희국
남인순	노웅래	도종환	류호정
맹성규	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덕흠	박범계	박병석
박성민	박성준	박영순	박용진
박재호	박정수	박정하	박주민
박찬대	박형수	박홍근	배진교
배현진	백종헌	백혜련	변재일
서동용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일준	서정숙	설훈
성일종	소병철	소병훈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호	신영대
신정훈	신현영	심상정	안규백
안민석	안철수	안호영	양경숙
양금희	양이원영	오기형	오영환
용혜인	우상호	위성곤	유경준
유기홍	유동수	유상범	유의동
유정주	윤건영	윤관석	윤미향
윤영덕	윤영석	윤영찬	윤재갑
윤재옥	윤주경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달곤	이동주
이만희	이명수	이병훈	이상민
이상헌	이성만	이소영	이수진
이수진(비)	이양수	이용호	이원욱
이용선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원택	이은주	이정문	이종성
이장섭	이재명	이태규	이학영
이주환	이채익	인재근	임병헌
이현승	이형석	임호선	장경태
임오경	임종성	장철민	전봉민
장동혁	장제원	장주혜	전혜숙
전용기	전재수	전일영	정점식
정동만	정운천	정준숙	정태호
정진석	정청래		

정필모	정희용	조경태	조명희
조수진	조승래	조오섭	조은희
조응천	주철현	주호영	지성호
진선미	진성준	최강욱	최기상
최승재	최연숙	최영희	최재형
최종윤	최춘식	최형두	최혜영
한기호	한무경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은아	허종식	홍석준
홍성국	홍영표	홍익표	홍정민
황보승희	황운하	황희	

반대 의원(1인)

박수영

기권 의원(1인)

정경희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투표 의원(239인)****찬성 의원(235인)**

강대식	강득구	강민국	강민정
강병원	강선우	강은미	강훈식
고민정	고용진	구자근	권명호
권성동	권인숙	권칠승	기동민
김경만	김경협	김교홍	김기현
김남국	김도읍	김민기	김민석
김민철	김병기	김병욱	김병주
김상훈	김상희	김선교	김성원
김성주	김성환	김수홍	김승남
김승원	김영배	김영선	김영진
김영호	김예지	김용민	김용관
김웅	김원이	김윤덕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진표	김철민
김학용	김한규	김한정	김형동
김홍걸	김회재	김희곤	김희국
남인순	노용호	노웅래	도종환
류호정	맹성규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덕흠
박범계	박병석	박성민	박성준
박영순	박용진	박재호	박정수
박정하	박주민	박찬대	박형수
박홍근	배진교	배현진	백종헌
백혜련	변재일	서동용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일준
서정숙	설훈	성일종	소병철
송재호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신영대	신영대	신정훈	신현영

심 상 정	안 민 석	안 철 수	안 호 영
양 경 숙	양 금 회	양이원영	엄 태 영
오 기 형	오 영 환	용 혜 인	우 상 호
위 성 곤	유 경 준	유 기 홍	유 동 수
유 상 범	유 의 동	유 정 주	윤 건 영
윤 관 석	윤 미 향	윤 영 덕	윤 영 석
윤 영 찬	윤 재 갑	윤 재 옥	윤 주 경
윤 준 병	윤 호 중	윤 후 덕	이 개 호
이 달 곤	이 동 주	이 만 희	이 명 수
이 병 훈	이 상 민	이 상 현	이 성 만
이 소 영	이 수 진	이수진(비)	이 양 수
이 용	이 용 빈	이 용 선	이 용 우
이 용 호	이 원 옥	이 원 택	이 은 주
이 인 선	이 인 영	이 장 섭	이 재 명
이 정 문	이 종 성	이 주 환	이 채 익
이 탄 희	이 학 영	이 해 식	이 현 승
이 형 석	인 재 근	임 병 현	임 오 경
임 이 자	임 종 성	임 호 선	장 경 태
장 동 혁	장 제 원	장 철 민	전 봉 민
전 용 기	전 재 수	전 주 혜	전 혜 숙
정 동 만	정 윤 천	정 일 영	정 점 식
정 청 래	정 춘 숙	정 태 호	정 필 모
정 희 용	조 경 태	조 명 희	조 승 래
조 오 섭	조 은 희	조 응 천	조 정 식
주 철 현	주 호 영	지 성 호	진 선 미
진 성 준	천 준 호	최 강 옥	최 기 상
최 승 재	최 연 숙	최 영 희	최 재 형
최 종 윤	최 춘 식	최 형 두	최 혜 영
한 기 호	한 무 경	한 병 도	한 정 애
한 준 호	허 은 아	허 종 식	홍 석 준
홍 성 국	홍 영 표	홍 익 표	홍 정 민
황보승희	황 윤 하	황 희	
기권 의원(4인)			
김 승 수	박 수 영	이 태 규	조 수 진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39인)

찬성 의원(236인)

강 대 식	강 득 구	강 민 국	강 민 정
강 병 원	강 선 우	강 은 미	강 훈 식
고 민 정	고 용 진	구 자 근	권 명 호
권 성 동	권 인 숙	권 철 승	기 동 민
김 경 만	김 경 협	김 교 홍	김 기 현
김 남 국	김 도 읍	김 민 기	김 민 석
김 민 철	김 병 기	김 병 옥	김 병 주

김 상 훈	김 상 회	김 석 기	김 선 교
김 성 원	김 성 주	김 성 환	김 수 홍
김 승 남	김 승 수	김 승 원	김 영 배
김 영 선	김 영 진	김 영 호	김 예 지
김 용 민	김 용 관	김 용	김 원 이
김 윤 덕	김 정 호	김 종 민	김 주 영
김 진 표	김 철 민	김 학 용	김 한 규
김 한 정	김 형 동	김 홍 결	김 회 재
김 희 곤	김 희 국	남 인 순	노 용 호
노 웅 래	도 종 환	류 호 정	맹 성 규
문 정 복	문 진 석	민 병 덕	민 형 배
민 홍 철	박 덕 흙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성 민	박 성 준	박 수 영	박 영 순
박 용 진	박 재 호	박 정	박 정 하
박 찬 대	박 형 수	박 홍 근	배 진 교
배 현 진	백 종 현	백 해 련	변 재 일
서 동 용	서 범 수	서 삼 석	서 영 교
서 영 석	서 일 준	서 정 숙	설 훈
성 일 종	소 병 철	소 병 훈	송 석 준
송 언 석	송 옥 주	송 재 호	신 영 대
신 정 훈	신 현 영	심 상 정	안 규 백
안 철 수	안 호 영	양 경 숙	양 금 회
양이원영	오 기 형	오 영 환	용 혜 인
우 상 호	위 성 곤	유 경 준	유 동 수
유 상 범	유 의 동	유 정 주	윤 건 영
윤 관 석	윤 미 향	윤 영 덕	윤 영 석
윤 영 찬	윤 재 갑	윤 재 옥	윤 주 경
윤 준 병	윤 호 중	윤 후 덕	이 개 호
이 달 곤	이 동 주	이 만 희	이 명 수
이 병 훈	이 상 민	이 상 현	이 성 만
이 소 영	이 수 진	이수진(비)	이 양 수
이 용	이 용 빈	이 용 선	이 용 우
이 용 호	이 원 옥	이 원 택	이 은 주
이 인 선	이 인 영	이 장 섭	이 재 명
이 정 문	이 종 성	이 주 환	이 탄 희
이 태 규	이 학 영	이 해 식	이 현 승
이 형 석	인 재 근	임 병 현	임 오 경
임 이 자	임 종 성	임 호 선	장 경 태
장 동 혁	장 제 원	전 봉 민	전 용 기
전 재 수	전 주 혜	전 혜 숙	정 경 희
정 동 만	정 윤 천	정 일 영	정 점 식
정 진 석	정 청 래	정 춘 숙	정 태 호
정 필 모	정 희 용	조 경 태	조 명 희
조 수 진	조 승 래	조 오 섭	조 은 희
조 응 천	조 정 식	주 철 현	주 호 영

지 성 호	진 선 미	진 성 준	천 준 호
최 강 욱	최 기 상	최 승 재	최 연 숙
최 영 희	최 재 형	최 중 윤	최 춘 식
최 형 두	한 기 호	한 무 경	한 병 도
한 정 애	한 준 호	허 은 아	허 중 식
홍 석 준	홍 성 국	홍 영 표	홍 익 표
홍 정 민	황보승희	황 운 하	황 희

반대 의원(1인)

엄 태 영

기권 의원(2인)

유 기 홍 장 철 민

(안철수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기권에서 찬성으로 정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투표 의원(237인)****찬성 의원(209인)**

강 대 식	강 득 구	강 민 국	강 민 정
강 병 원	강 선 우	강 은 미	강 훈 식
고 민 정	고 용 진	구 자 근	권 명 호
권 성 동	권 인 숙	권 철 승	기 동 민
김 경 만	김 경 협	김 교 홍	김 기 현
김 남 국	김 도 읍	김 민 기	김 민 석
김 민 철	김 병 기	김 병 욱	김 병 주
김 상 훈	김 상 희	김 석 기	김 성 원
김 성 주	김 성 환	김 수 홍	김 승 남
김 승 원	김 영 배	김 영 선	김 영 진
김 영 호	김 예 지	김 용 민	김 용 판
김 웅	김 원 이	김 윤 덕	김 정 호
김 종 민	김 주 영	김 진 표	김 철 민
김 학 용	김 한 규	김 한 정	김 형 동
김 홍 결	김 회 재	김 회 곤	김 회 국
남 인 순	노 용 호	노 웅 래	도 중 환
류 호 정	맹 성 규	문 정 복	문 진 석
민 병 덕	민 형 배	민 홍 철	박 덕 흠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성 준	박 영 순
박 용 진	박 재 호	박 정	박 정 하
박 찬 대	박 홍 근	배 진 교	백 중 헌
백 혜 련	변 재 일	서 동 용	서 범 수
서 삼 석	서 영 교	서 영 석	설 훈
소 병 철	소 병 훈	송 석 준	송 욱 주
송 재 호	신 영 대	신 정 훈	신 현 영
심 상 정	안 규 백	안 민 석	안 호 영
양 경 숙	양이원영	오 기 형	오 영 환

용 혜 인	우 상 호	위 성 곤	유 동 수
유 정 주	윤 건 영	윤 관 석	윤 미 향
윤 영 덕	윤 영 석	윤 영 찬	윤 재 갑
윤 재 욱	윤 준 병	윤 호 중	윤 후 덕
이 개 호	이 달 곤	이 동 주	이 만 회
이 명 수	이 상 현	이 성 만	이 소 영
이 수 진	이수진(비)	이 양 수	이 용
이 용 빈	이 용 선	이 용 우	이 원 욱
이 원 택	이 은 주	이 인 선	이 인 영
이 장 섭	이 재 명	이 정 문	이 종 성
이 채 익	이 탄 회	이 학 영	이 해 식
이 현 승	이 형 석	인 재 근	임 병 현
임 오 경	임 종 성	임 호 선	장 경 태
장 동 혁	장 제 원	장 철 민	전 봉 민
전 용 기	전 재 수	전 주 혜	전 혜 숙
정 동 만	정 운 천	정 일 영	정 점 식
정 진 석	정 청 래	정 춘 숙	정 태 호
정 필 모	정 희 용	조 경 태	조 승 래
조 오 섭	조 은 희	조 웅 천	조 정 식
주 철 현	지 성 호	진 선 미	진 성 준
천 준 호	최 강 욱	최 기 상	최 연 숙
최 영 희	최 중 윤	최 춘 식	최 형 두
최 혜 영	한 병 도	한 정 애	한 준 호
허 은 아	허 중 식	홍 성 국	홍 영 표
홍 익 표	홍 정 민	황보승희	황 운 하
황 희			

반대 의원(10인)

박 수 영	배 현 진	서 정 숙	안 철 수
양 금 희	엄 태 영	유 경 준	임 이 자
최 재 형	한 무 경		

기권 의원(18인)

김 선 교	김 승 수	박 성 민	박 형 수
서 일 준	성 일 중	유 기 홍	유 상 범
유 의 동	이 용 호	이 주 환	이 태 규
정 경 희	조 명 희	조 수 진	주 호 영
최 승 재	홍 석 준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투표 의원(238인)****찬성 의원(234인)**

강 대 식	강 득 구	강 민 국	강 민 정
강 병 원	강 선 우	강 은 미	강 훈 식
고 민 정	고 용 진	구 자 근	권 명 호
권 성 동	권 인 숙	권 철 승	기 동 민
김 경 만	김 경 협	김 교 홍	김 기 현

김 남 국	김 도 읍	김 민 기	김 민 철
김 병 기	김 병 욱	김 병 주	김 상 훈
김 상 희	김 석 기	김 선 교	김 성 원
김 성 주	김 성 환	김 수 홍	김 승 남
김 승 수	김 승 원	김 영 배	김 영 진
김 영 호	김 예 지	김 용 민	김 용 판
김 웅	김 원 이	김 윤 덕	김 정 호
김 종 민	김 주 영	김 진 표	김 철 민
김 학 용	김 한 규	김 한 정	김 형 동
김 홍 결	김 회 재	김 회 곤	김 회 국
남 인 순	노 용 호	노 웅 래	도 중 환
류 호 정	맹 성 규	문 정 복	문 진 석
민 병 덕	민 형 배	민 홍 철	박 덕 흙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성 민	박 성 준
박 수 영	박 영 순	박 용 진	박 재 호
박 정	박 정 하	박 찬 대	박 형 수
박 홍 근	배 진 교	배 현 진	백 중 헌
백 혜련	변 재 일	서 동 용	서 범 수
서 삼 석	서 영 교	서 영 석	서 일 준
서 정 숙	설 훈	성 일 중	소 병 철
소 병 훈	송 석 준	송 언 석	송 옥 주
송 재 호	신 영 대	신 정 훈	심 상 정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철 수	안 호 영
양 경 숙	양 금 희	양이원영	엄 태 영
오 기 형	오 영 환	용 혜 인	우 상 호
위 성 곤	유 경 준	유 기 홍	유 동 수
유 상 범	유 의 동	유 정 주	윤 건 영
윤 관 석	윤 미 향	윤 영 덕	윤 영 석
윤 영 찬	윤 재 갑	윤 재 욱	윤 주 경
윤 준 병	윤 호 중	윤 후 덕	이 개 호
이 달 곤	이 동 주	이 만 희	이 명 수
이 병 훈	이 상 민	이 상 훈	이 성 만
이 소 영	이 수 진	이 양 수	이 용
이 용 선	이 용 우	이 용 호	이 원 욱
이 원 택	이 은 주	이 인 선	이 인 영
이 장 섭	이 재 명	이 정 문	이 종 성
이 주 환	이 채 익	이 탄 희	이 태 규
이 학 영	이 해 식	이 현 승	이 형 석
인 재 근	임 병 현	임 오 경	임 이 자
임 호 선	장 경 태	장 동 혁	장 제 원
장 철 민	전 봉 민	전 용 기	전 재 수
전 주 혜	전 혜 숙	정 경 희	정 동 만
정 운 천	정 일 영	정 점 식	정 진 석
정 청 래	정 춘 숙	정 태 호	정 필 모
정 회 용	조 경 태	조 명 희	조 수 진

조 승 래	조 오 섭	조 은 회	조 응 천
조 정 식	주 철 현	주 호 영	지 성 호
진 선 미	진 성 준	천 준 호	최 강 욱
최 기 상	최 승 재	최 연 숙	최 영 희
최 재 형	최 종 윤	최 형 두	최 혜 영
한 기 호	한 무 경	한 병 도	한 정 애
허 은 아	허 종 식	홍 석 준	홍 성 국
홍 영 표	홍 익 표	홍 정 민	황보승희
황 운 하	황 회		

기권 의원(4인)

김 영 선 이수진(비) 임 종 성 최 춘 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35인)

찬성 의원(231인)

강 대 식	강 득 구	강 민 국	강 민 정
강 병 원	강 선 우	강 은 미	강 훈 식
고 민 정	고 용 진	구 자 근	권 명 호
권 성 동	권 인 숙	권 칠 승	기 동 민
김 경 만	김 경 협	김 교 홍	김 기 현
김 남 국	김 도 읍	김 민 기	김 민 석
김 민 철	김 병 기	김 병 욱	김 병 주
김 상 훈	김 상 희	김 성 원	김 성 주
김 성 환	김 수 홍	김 승 남	김 승 수
김 승 원	김 영 배	김 영 선	김 영 진
김 영 호	김 예 지	김 용 민	김 용 판
김 웅	김 원 이	김 윤 덕	김 정 호
김 종 민	김 주 영	김 진 표	김 철 민
김 학 용	김 한 규	김 한 정	김 형 동
김 홍 결	김 회 재	김 회 곤	김 회 국
남 인 순	노 용 호	노 웅 래	도 중 환
류 호 정	맹 성 규	문 정 복	문 진 석
민 병 덕	민 형 배	민 홍 철	박 덕 흙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성 준	박 수 영
박 영 순	박 용 진	박 재 호	박 정
박 정 하	박 찬 대	박 형 수	박 홍 근
배 진 교	배 현 진	백 중 헌	백 혜련
변 재 일	서 동 용	서 범 수	서 삼 석
서 영 교	서 영 석	서 일 준	서 정 숙
설 훈	성 일 중	소 병 철	소 병 훈
송 석 준	송 언 석	송 옥 주	송 재 호
신 영 대	신 정 훈	신 현 영	심 상 정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철 수	안 호 영
양 경 숙	양 금 희	엄 태 영	오 기 형
오 영 환	용 혜 인	우 상 호	위 성 곤

유 기 홍	유 동 수	유 의 동	유 정 주
윤 건 영	윤 관 석	윤 미 향	윤 영 덕
윤 영 석	윤 영 찬	윤 재 갑	윤 재 옥
윤 준 병	윤 호 중	윤 후 덕	이 개 호
이 달 곤	이 동 주	이 만 희	이 명 수
이 병 훈	이 상 민	이 상 헌	이 성 만
이 소 영	이 수 진	이수진(비)	이 양 수
이 용 선	이 용 우	이 용 호	이 원 옥
이 원 택	이 은 주	이 인 선	이 인 영
이 장 섭	이 재 명	이 정 문	이 종 성
이 주 환	이 채 익	이 탄 희	이 태 규
이 학 영	이 해 식	이 헌 승	이 형 석
인 재 근	임 병 헌	임 오 경	임 이 자
임 종 성	임 호 선	장 경 태	장 동 혁
장 제 원	장 철 민	전 봉 민	전 용 기
전 재 수	전 주 혜	전 혜 숙	정 경 희
정 동 만	정 운 천	정 일 영	정 점 식
정 진 석	정 청 래	정 춘 숙	정 태 호
정 필 모	정 희 용	조 경 태	조 명 희
조 승 래	조 오 섭	조 은 희	조 응 천
조 정 식	주 철 현	주 호 영	지 성 호
진 선 미	진 성 준	천 준 호	최 강 옥
최 기 상	최 승 재	최 연 숙	최 영 희
최 재 형	최 종 윤	최 춘 식	최 형 두
최 해 영	한 기 호	한 무 경	한 병 도
한 정 애	허 은 아	허 종 식	홍 석 준
홍 성 국	홍 영 표	홍 익 표	홍 정 민
황보승희	황 운 하	황 희	

기권 의원(4인)

유 경 준	유 상 범	조 수 진	한 준 호
-------	-------	-------	-------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투표 의원(236인)****찬성 의원(234인)**

강 대 식	강 득 구	강 민 국	강 민 정
강 병 원	강 선 우	강 은 미	강 훈 식
고 민 정	고 용 진	구 자 근	권 명 호
권 성 동	권 인 숙	권 칠 승	기 동 민
김 경 만	김 교 홍	김 기 현	김 남 국
김 도 읍	김 민 기	김 민 석	김 민 철
김 병 기	김 병 옥	김 병 주	김 상 훈
김 상 희	김 석 기	김 선 교	김 성 원
김 성 주	김 성 환	김 수 흥	김 승 남
김 승 수	김 영 배	김 영 선	김 영 진
김 영 호	김 예 지	김 용 민	김 용 판

김 웅	김 원 이	김 정 호	김 종 민
김 주 영	김 진 표	김 철 민	김 학 용
김 한 규	김 한 정	김 형 동	김 홍 결
김 회 재	김 희 곤	김 희 국	남 인 순
노 용 호	노 응 래	도 종 환	류 호 정
맹 성 규	문 정 복	민 병 덕	민 형 배
민 홍 철	박 덕 흙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성 민	박 성 준	박 수 영	박 영 순
박 용 진	박 재 호	박 정	박 정 하
박 찬 대	박 형 수	박 홍 근	배 진 교
배 현 진	백 종 헌	백 해 련	변 재 일
서 동 용	서 범 수	서 삼 석	서 영 교
서 영 석	서 일 준	서 정 숙	설 훈
성 일 종	소 병 철	소 병 훈	송 석 준
송 언 석	송 옥 주	송 재 호	신 영 대
신 정 훈	심 상 정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철 수	안 호 영	양 경 숙	양 금 회
양이원영	엄 태 영	오 기 형	오 영 환
용 해 인	우 상 호	위 성 곤	유 경 준
유 기 홍	유 동 수	유 상 범	유 의 동
유 정 주	윤 건 영	윤 관 석	윤 미 향
윤 영 덕	윤 영 석	윤 영 찬	윤 재 갑
윤 재 옥	윤 주 경	윤 준 병	윤 호 중
윤 후 덕	이 개 호	이 달 곤	이 동 주
이 만 희	이 명 수	이 병 훈	이 상 민
이 상 헌	이 성 만	이 소 영	이 수 진
이수진(비)	이 양 수	이 용 선	이 용 우
이 용 호	이 원 옥	이 원 택	이 은 주
이 인 선	이 인 영	이 장 섭	이 재 명
이 정 문	이 종 성	이 주 환	이 채 익
이 탄 희	이 태 규	이 학 영	이 해 식
이 헌 승	이 형 석	인 재 근	임 병 헌
임 오 경	임 이 자	임 종 성	임 호 선
장 경 태	장 동 혁	장 제 원	장 철 민
전 봉 민	전 용 기	전 재 수	전 주 혜
전 혜 숙	정 경 희	정 동 만	정 운 천
정 일 영	정 점 식	정 진 석	정 청 래
정 춘 숙	정 태 호	정 필 모	정 희 용
조 경 태	조 명 희	조 수 진	조 승 래
조 오 섭	조 응 천	조 정 식	주 철 현
주 호 영	지 성 호	진 선 미	진 성 준
천 준 호	최 강 옥	최 기 상	최 승 재
최 연 숙	최 영 희	최 재 형	최 종 윤
최 춘 식	최 형 두	최 해 영	한 기 호
최 연 숙	최 형 두	한 정 애	한 준 호
한 무 경	한 병 도		

허 은 아	허 종 식	홍 석 준	홍 성 국
홍 영 표	홍 익 표	홍 정 민	황보승희
황 운 하	황 희		
기권 의원(2인)			
김 승 원	문 진 석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투표 의원(238인)

찬성 의원(236인)

강 대 식	강 득 구	강 민 국	강 민 정
강 병 원	강 선 우	강 은 미	강 훈 식
고 민 정	고 용 진	구 자 근	권 명 호
권 성 동	권 인 숙	권 칠 승	기 동 민
김 경 만	김 경 협	김 교 홍	김 기 현
김 남 국	김 도 읍	김 민 기	김 민 석
김 민 철	김 병 기	김 병 욱	김 병 주
김 상 훈	김 상 희	김 석 기	김 선 교
김 성 원	김 성 주	김 성 환	김 수 흥
김 승 남	김 승 수	김 승 원	김 영 배
김 영 선	김 영 진	김 영 호	김 예 지
김 용 민	김 용 판	김 용	김 원 이
김 윤 덕	김 정 호	김 종 민	김 주 영
김 진 표	김 철 민	김 학 용	김 한 규
김 한 정	김 형 동	김 홍 결	김 회 재
김 희 곤	김 희 국	남 인 순	노 용 호
노 웅 래	도 종 환	류 호 정	맹 성 규
문 정 복	문 진 석	민 병 덕	민 형 배
민 홍 철	박 덕 흙	박 범 계	박 성 준
박 수 영	박 영 순	박 용 진	박 정
박 정 하	박 찬 대	박 형 수	박 홍 근
배 진 교	배 현 진	백 종 헌	백 해 련
변 재 일	서 동 용	서 범 수	서 삼 석
서 영 교	서 영 석	서 일 준	서 정 숙
설 훈	성 일 종	소 병 철	소 병 훈
송 석 준	송 언 석	송 욱 주	송 재 호
신 영 대	신 정 훈	신 현 영	심 상 정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철 수	안 호 영
양 경 숙	양 금 희	양이원영	엄 태 영
오 기 형	오 영 환	용 혜 인	우 상 호
위 성 곤	유 경 준	유 기 흥	유 동 수
유 의 동	유 정 주	윤 건 영	윤 관 석
윤 미 향	윤 영 덕	윤 영 석	윤 영 찬
윤 재 갑	윤 재 욱	윤 주 경	윤 준 병
윤 호 중	윤 후 덕	이 개 호	이 달 곤

이 동 주	이 만 회	이 명 수	이 병 훈
이 상 민	이 상 현	이 성 만	이 소 영
이 수 진	이수진(비)	이 양 수	이 용 선
이 용 우	이 용 호	이 원 욱	이 원 택
이 은 주	이 인 선	이 인 영	이 장 섭
이 재 명	이 정 문	이 종 성	이 주 환
이 채 익	이 탄 회	이 태 규	이 학 영
이 해 식	이 현 승	이 형 석	인 재 근
임 병 현	임 오 경	임 이 자	임 종 성
임 호 선	장 경 태	장 동 혁	장 제 원
장 철 민	전 봉 민	전 용 기	전 재 수
전 주 혜	전 혜 숙	정 경 회	정 동 만
정 성 호	정 운 천	정 일 영	정 점 식
정 진 석	정 청 래	정 춘 숙	정 태 호
정 필 모	정 희 용	조 경 태	조 명 회
조 수 진	조 승 래	조 오 섭	조 은 희
조 응 천	주 철 현	주 호 영	지 성 호
진 선 미	진 성 준	천 준 호	최 강 욱
최 기 상	최 승 재	최 연 숙	최 영 희
최 재 형	최 종 윤	최 춘 식	최 형 두
최 혜 영	한 기 호	한 무 경	한 병 도
한 정 애	한 준 호	허 은 아	허 종 식
홍 석 준	홍 성 국	홍 영 표	홍 익 표
홍 정 민	황보승희	황 운 하	황 희

반대 의원(1인)

박 병 석

기권 의원(1인)

박 성 민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33인)

찬성 의원(230인)

강 대 식	강 득 구	강 민 국	강 민 정
강 병 원	강 선 우	강 은 미	강 훈 식
고 민 정	고 용 진	구 자 근	권 명 호
권 성 동	권 인 숙	권 칠 승	기 동 민
김 경 만	김 경 협	김 교 홍	김 남 국
김 도 읍	김 민 기	김 민 석	김 민 철
김 병 기	김 병 욱	김 병 주	김 상 훈
김 상 희	김 선 교	김 성 원	김 성 주
김 성 환	김 수 흥	김 승 남	김 승 수
김 승 원	김 영 배	김 영 진	김 영 호
김 예 지	김 용 민	김 용 판	김 용
김 원 이	김 윤 덕	김 정 호	김 종 민
김 주 영	김 진 표	김 철 민	김 학 용

김한규	김한정	김형동	김희재
김희곤	김희국	김인순	김노용
노웅래	도종환	류호정	노용호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맹성규
민홍철	박덕흠	박범계	민형배
박성민	박성준	박수영	박병석
박용진	박재호	박정	박영순
박찬대	박형수	박홍근	박정하
배현진	백종헌	백혜련	배진교
서동용	서범수	서삼석	변재일
서영석	서일준	서정숙	서영교
성일종	소병철	소병훈	설훈
송언석	송옥주	송재호	송석준
신정훈	심상정	안규백	신영대
안호영	양경숙	양금희	안민석
엄태영	오기형	오영환	양이원영
우상호	위성곤	유경준	용혜인
유동수	유상범	유의동	유기홍
윤건영	윤관석	윤미향	유정주
윤영석	윤영찬	윤재갑	윤영덕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윤재옥
이달곤	이동주	이만희	이개호
이병훈	이상민	이상헌	이명수
이소영	이수진	이수진(비)	이성만
이용선	이용우	이용호	이양수
이원택	이은주	이인선	이원욱
이장섭	이재명	이정문	이인영
이주환	이채익	이탄희	이종성
이학영	이해식	이헌승	이태규
인재근	임병헌	임오경	이형석
임종성	임호선	장경태	임자혁
장제원	장철민	전봉민	장동혁
전재수	전주혜	전혜숙	전용기
정동만	정성호	정운천	정경희
정점식	정진석	정청래	정일영
정태호	정필모	정희용	정춘숙
조명희	조수진	조승래	조경태
조은희	조웅천	주철현	조오섭
지성호	진선미	진성준	주호영
최강욱	최기상	최승재	천준호
최종윤	최춘식	최형두	최영희
한기호	한무경	한병도	최혜영
한준호	허은아	허종식	한정애
홍성국	홍영표	홍익표	홍석준
황보승희	황희		홍정민

반대 의원(2인)

김영선 안철수

기권 의원(1인)

최재형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투표 의원(225인)****찬성 의원(221인)**

장득구	장민정	장병원	장은미
장훈식	고민정	고용진	구자근
권성동	권인숙	기동민	김경만
김경협	김교홍	김남국	김도읍
김미애	김민기	김민석	김민철
김병욱	김병주	김상훈	김상희
김석기	김선교	김성주	김성환
김수홍	김승남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선	김영진	김영호
김예지	김용민	김용관	김웅
김원이	김윤덕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진표	김철민	김학용
김한규	김한정	김형동	김홍걸
김희곤	김희국	남인순	김용호
노웅래	도종환	류호정	맹성규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덕흠	박범계	박병석
박상혁	박성민	박성준	박수영
박영순	박용진	박재호	박정
박정하	박찬대	박형수	박홍근
배진교	백종헌	백혜련	변재일
서동용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정숙	설훈	성일종
소병철	소병훈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호	신영대	신원식
신정훈	신현영	심상정	안규백
안민석	안호영	양경숙	양금희
양이원영	엄태영	오기형	오영환
용혜인	우상호	위성곤	유경준
유기홍	유동수	유상범	유의동
유정주	윤건영	윤관석	윤영덕
윤영석	윤재갑	윤재옥	윤주경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달곤	이동주	이만희	이명수
이병훈	이상민	이상헌	이성만
이용선	이용호	이수진(비)	이양수
이원택	이원욱		

이 은 주	이 인 선	이 인 영	이 장 섭
이 재 명	이 정 문	이 종 성	이 주 환
이 채 익	이 탄 희	이 태 규	이 학 영
이 해 식	이 현 승	이 형 석	인 재 근
임 병 헌	임 오 경	임 이 자	임 종 성
임 호 선	장 동 혁	장 철 민	전 봉 민
전 용 기	전 재 수	전 주 혜	전 혜 숙
정 경 희	정 동 만	정 성 호	정 운 천
정 일 영	정 점 식	정 진 석	정 청 래
정 춘 숙	정 태 호	정 필 모	정 희 용
조 경 태	조 승 래	조 오 섭	조 응 천
주 철 현	주 호 영	지 성 호	진 선 미
진 성 준	최 강 욱	최 기 상	최 승 재
최 연 숙	최 영 희	최 재 형	최 종 윤
최 춘 식	최 형 두	한 기 호	한 무 경
한 병 도	한 정 애	한 준 호	허 영
허 은 아	허 종 식	홍 석 준	홍 성 국
홍 영 표	홍 익 표	홍 정 민	황보승희
황 운 하			

기권 의원(4인)

권 명 호 윤 미 향 조 명 희 조 수 진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0인)

찬성 의원(219인)

강 득 구	강 민 정	강 병 원	강 은 미
강 훈 식	고 민 정	고 용 진	구 자 근
권 명 호	권 성 동	권 인 숙	기 동 민
김 경 만	김 경 협	김 교 홍	김 남 국
김 도 읍	김 미 애	김 민 기	김 민 철
김 병 욱	김 병 주	김 상 훈	김 상 희
김 선교	김 성 주	김 성 환	김 수 홍
김 승 남	김 승 수	김 승 원	김 영 배
김 영 선	김 영 진	김 영 호	김 예 지
김 용 민	김 용 판	김 웅	김 원 이
김 윤 덕	김 정 호	김 종 민	김 주 영
김 진 표	김 철 민	김 학 용	김 한 규
김 한 정	김 형 동	김 홍 결	김 희 곤
김 희 국	남 인 순	노 용 호	노 용 래
도 종 환	류 호 정	맹 성 규	문 정 복
문 진 석	민 병 덕	민 형 배	민 홍 철
박 덕 흙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상 혁
박 성 민	박 성 준	박 수 영	박 영 순
박 용 진	박 재 호	박 정	박 정 하
박 찬 대	박 형 수	박 홍 근	배 진 교

백 종 현	백 혜련	변 재 일	서 동 용
서 범 수	서 삼 석	서 영 석	서 정 숙
설 훈	성 일 종	소 병 철	소 병 훈
송 석 준	송 언 석	송 옥 주	송 재 호
신 영 대	신 원 식	신 정 훈	심 상 정
안 규 백	안 민 석	안 호 영	양 경 숙
양 금 희	양이원영	엄 태 영	오 기 형
오 영 환	용 혜 인	우 상 호	위 성 곤
유 경 준	유 기 홍	유 동 수	유 상 범
유 의 동	유 정 주	윤 건 영	윤 관 석
윤 미 향	윤 영 덕	윤 영 석	윤 재 욱
윤 주 경	윤 준 병	윤 호 중	윤 후 덕
이 개 호	이 달 곤	이 동 주	이 만 희
이 명 수	이 병 훈	이 상 민	이 상 현
이 성 만	이 소 영	이 수 진	이수진(비)
이 양 수	이 용	이 용 선	이 용 호
이 원 욱	이 원 택	이 은 주	이 인 선
이 인 영	이 장 섭	이 재 명	이 정 문
이 종 성	이 주 환	이 채 익	이 탄 희
이 태 규	이 학 영	이 해 식	이 현 승
이 형 석	인 재 근	임 병 헌	임 오 경
임 이 자	임 종 성	임 호 선	장 동 혁
장 철 민	전 봉 민	전 용 기	전 재 수
전 주 혜	전 혜 숙	정 동 만	정 성 호
정 운 천	정 일 영	정 점 식	정 진 석
정 청 래	정 춘 숙	정 태 호	정 필 모
정 희 용	조 경 태	조 명 희	조 승 래
조 오 섭	조 응 천	주 철 현	주 호 영
지 성 호	진 선 미	진 성 준	최 강 욱
최 기 상	최 승 재	최 영 희	최 재 형
최 종 윤	최 춘 식	최 형 두	최 혜 영
한 기 호	한 무 경	한 병 도	한 정 애
한 준 호	허 영	허 은 아	허 종 식
홍 석 준	홍 성 국	홍 영 표	홍 익 표
홍 정 민	황보승희	황 운 하	

기권 의원(1인)

조 수 진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6인)

찬성 의원(225인)

강 득 구	강 민 정	강 병 원	강 은 미
강 훈 식	고 민 정	고 용 진	구 자 근
권 명 호	권 성 동	권 인 숙	기 동 민
김 경 만	김 경 협	김 교 홍	김 남 국

김도읍	김미애	김민기	김민석
김민철	김병욱	김병주	김상훈
김상희	김선교	김성주	김성환
김수홍	김승남	김승수	김영배
김영선	김영진	김영호	김예지
김용민	김용판	김웅	김원이
김윤택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진표	김철민	김학용	김한규
김한정	김형동	김홍걸	김희곤
김희국	남인순	노용호	노웅래
도종환	류호정	맹성규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덕흠	박범계	박병석	박상혁
박성민	박성준	박수영	박영순
박용진	박재호	박정	박정하
박찬대	박형수	박홍근	배진교
백종현	백혜련	변재일	서동용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정숙	설훈	성일종	소병철
소병훈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호	신영대	신원식	신정훈
신현영	심상정	안규백	안민석
안호영	양경숙	양금희	양이원영
엄태영	오기형	오영환	용혜인
우상호	위성곤	유경준	유기홍
유동수	유상범	유의동	유정주
윤건영	윤관석	윤미향	윤영덕
윤영석	윤재갑	윤재옥	윤주경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달곤	이동주	이만희	이명수
이병훈	이상민	이상헌	이성만
이소영	이수진	이수진(비)	이양수
이용	이용선	이용우	이용호
이원욱	이원택	이은주	이인선
이인영	이장섭	이재명	이정문
이종성	이주환	이채익	이탄희
이태규	이학영	이해식	이현승
이형석	인재근	임병헌	임오경
임이자	임종성	임호선	장동혁
장철민	전봉민	전용기	전재수
전주혜	전혜숙	정경희	정동만
정성호	정운천	정일영	정점식
정진석	정청래	정춘숙	정태호
정필모	정희용	조경태	조명희
조수진	조승래	조오섭	조웅천

주철현	주호영	지성호	진선미
진성준	최강욱	최기상	최승재
최영희	최재형	최종윤	최춘식
최형두	최혜영	한기호	한무경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영
허은아	허종식	홍석준	홍성국
홍영표	홍익표	홍정민	황보승희
황운하			

기관 의원(1인)

김승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9인)

찬성 의원(203인)

강득구	강민정	강병원	강은미
강훈식	고민정	고용진	구자근
권명호	권인숙	기동민	김경만
김경협	김교홍	김남국	김도읍
김민기	김민석	김민철	김병욱
김병주	김상훈	김상희	김성주
김성환	김수홍	김승남	김승원
김영배	김영선	김영진	김영호
김예지	김용민	김용판	김웅
김원이	김윤택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진표	김철민	김학용
김한규	김한정	김형동	김홍걸
김희곤	김희국	남인순	노용호
노웅래	도종환	류호정	맹성규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덕흠	박범계	박병석
박상혁	박성민	박성준	박영순
박용진	박재호	박정	박정하
박찬대	박형수	박홍근	배진교
백혜련	변재일	서동용	서범수
서삼석	서영석	서정숙	설훈
성일종	소병철	소병훈	송석준
송옥주	송재호	신영대	신원식
신정훈	신현영	심상정	안규백
안민석	안호영	양경숙	양이원영
오기형	오영환	용혜인	우상호
위성곤	유기홍	유동수	유의동
유정주	윤건영	윤관석	윤미향
윤영덕	윤영석	윤재갑	윤재옥
윤준병	윤호중	이개호	이달곤

이 동 주	이 만 희	이 명 수	이 병 훈
이 상 민	이 상 현	이 성 만	이 소 영
이 수 진	이수진(비)	이 용 선	이 용 우
이 용 호	이 원 욱	이 원 택	이 은 주
이 인 선	이 인 영	이 장 섭	이 재 명
이 정 문	이 종 성	이 주 환	이 채 익
이 탄 희	이 학 영	이 해 식	이 현 승
임 종 성	임 재 근	임 병 현	임 오 경
전 봉 민	임 호 선	장 동 혁	장 철 민
전 혜 숙	전 용 기	전 재 수	전 주 혜
정 일 영	정 동 만	정 성 호	정 운 천
정 태 호	정 진 석	정 청 래	정 춘 숙
조 명 희	정 필 모	정 희 용	조 경 태
주 철 현	조 승 래	조 오 섭	조 응 천
진 성 준	주 호 영	지 성 호	진 선 미
최 영 희	최 강 욱	최 기 상	최 승 재
최 형 두	최 재 형	최 종 윤	최 춘 식
한 정 애	최 혜 영	한 무 경	한 병 도
홍 석 준	한 준 호	허 영	허 종 식
홍 정 민	홍 성 국	홍 영 표	홍 익 표
	황보승희	황 운 하	

반대 의원(3인)

권 성 동	엄 태 영	유 상 범
-------	-------	-------

기권 의원(13인)

김 미 애	김 선 교	김 승 수	박 수 영
양 금 희	유 경 준	윤 주 경	윤 후 덕
이 용	이 태 규	임 이 자	조 수 진
허 은 아			

(한준호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기권에서 찬성으로 정정)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4인)

찬성 의원(205인)

강 득 구	강 민 정	강 병 원	강 은 미
강 훈 식	고 민 정	고 용 진	구 자 근
권 성 동	권 인 숙	기 동 민	김 경 만
김 경 협	김 교 홍	김 남 국	김 도 읍
김 미 애	김 민 기	김 민 석	김 민 철
김 병 욱	김 병 주	김 상 희	김 선 교
김 성 주	김 성 환	김 수 홍	김 승 남
김 승 원	김 영 배	김 영 진	김 영 호
김 예 지	김 용 민	김 용 판	김 웅
김 원 이	김 윤 덕	김 정 호	김 종 민
김 주 영	김 진 표	김 철 민	김 학 용

김 한 규	김 한 정	김 형 동	김 홍 걸
김 회 곤	김 회 국	남 인 순	노 용 래
도 종 환	류 호 정	맹 성 규	문 정 복
문 진 석	민 병 덕	민 형 배	민 홍 철
박 덕 흙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상 혁
박 성 준	박 영 순	박 완 주	박 용 진
박 재 호	박 정	박 정 하	박 찬 대
박 형 수	박 홍 근	배 진 교	백 종 현
백 혜 련	변 재 일	서 동 용	서 범 수
서 삼 석	서 영 교	서 영 석	서 정 숙
설 훈	성 일 중	소 병 철	소 병 훈
송 언 석	송 옥 주	송 재 호	신 영 대
신 원 식	신 정 훈	신 현 영	심 상 정
안 규 백	안 민 석	안 호 영	양 경 숙
양 금 희	양이원영	엄 태 영	오 기 형
오 영 환	용 혜 인	우 상 호	위 성 곤
유 기 홍	유 동 수	유 의 동	유 정 주
윤 건 영	윤 관 석	윤 미 향	윤 영 덕
윤 영 석	윤 재 갑	윤 재 욱	윤 준 병
윤 호 중	윤 후 덕	이 개 호	이 달 곤
이 동 주	이 만 희	이 명 수	이 병 훈
이 상 민	이 상 현	이 성 만	이 소 영
이 수 진	이수진(비)	이 양 수	이 용
이 용 선	이 용 우	이 원 욱	이 원 택
이 은 주	이 인 영	이 장 섭	이 재 명
이 정 문	이 종 성	이 주 환	이 채 익
이 탄 희	이 태 규	이 학 영	이 해 식
이 현 승	이 형 석	인 재 근	임 병 현
임 오 경	임 종 성	임 호 선	장 동 혁
장 철 민	전 봉 민	전 용 기	전 재 수
전 혜 숙	정 동 만	정 성 호	정 운 천
정 일 영	정 점 식	정 진 석	정 청 래
정 춘 숙	정 태 호	정 필 모	조 경 태
조 승 래	조 오 섭	조 응 천	주 철 현
주 호 영	지 성 호	진 선 미	진 성 준
최 강 욱	최 기 상	최 승 재	최 영 희
최 재 형	최 종 윤	최 춘 식	최 형 두
최 혜 영	한 기 호	한 무 경	한 병 도
한 정 애	한 준 호	허 영	허 종 식
홍 성 국	홍 영 표	홍 익 표	홍 정 민
황 운 하			

반대 의원(3인)

권 명 호	김 승 수	송 석 준
-------	-------	-------

기권 의원(16인)

김 영 선	노 용 호	박 성 민	박 수 영
-------	-------	-------	-------

유 경 준	유 상 범	이 용 호	이 인 선
임 이 자	전 주 혜	정 경 희	정 희 용
조 명 희	조 수 진	허 은 아	황보승희

이 장 섭	이 재 명	이 정 문	이 종 성
이 주 환	이 채 익	이 탄 회	이 태 규
이 학 영	이 해 식	이 현 승	이 형 석
인 재 근	임 병 현	임 오 경	임 종 성
임 호 선	장 동 혁	장 철 민	전 봉 민
전 용 기	전 재 수	전 주 혜	전 혜 숙
정 경 희	정 성 호	정 윤 천	정 일 영
정 점 식	정 진 석	정 청 래	정 춘 숙
정 태 호	정 필 모	정 희 용	조 경 태
조 수 진	조 승 래	조 오 섭	조 응 천
주 철 현	주 호 영	지 성 호	진 선 미
진 성 준	최 강 옥	최 기 상	최 승 재
최 영 희	최 재 형	최 종 윤	최 춘 식
최 형 두	최 혜 영	한 기 호	한 무 경
한 병 도	한 정 애	한 준 호	허 영 표
허 종 식	홍 성 국	홍 영 표	홍 익 표
홍 정 민	황보승희	황 윤 하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6인)

찬성 의원(219인)

강 득 구	강 민 정	강 병 원	강 은 미
강 훈 식	고 민 정	고 용 진	구 자 근
권 명 호	권 성 동	권 인 숙	기 동 민
김 경 만	김 경 협	김 교 홍	김 남 국
김 도 읍	김 민 기	김 민 석	김 민 철
김 병 옥	김 병 주	김 상 훈	김 상 희
김 선 교	김 성 주	김 성 환	김 수 흥
김 승 남	김 승 수	김 승 원	김 영 배
김 영 선	김 영 진	김 영 호	김 예 지
김 용 민	김 용 판	김 용	김 원 이
김 윤 덕	김 정 호	김 종 민	김 주 영
김 진 표	김 철 민	김 학 용	김 한 규
김 한 정	김 형 동	김 홍 결	김 회 곤
김 희 국	남 인 순	노 용 호	노 웅 래
도 종 환	류 호 정	맹 성 규	문 정 복
문 진 석	민 병 덕	민 형 배	민 홍 철
박 덕 흙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상 혁
박 성 민	박 성 준	박 수 영	박 영 순
박 완 주	박 용 진	박 재 호	박 정
박 정 하	박 찬 대	박 형 수	박 홍 근
배 진 교	백 종 현	백 혜련	변 재 일
서 동 용	서 범 수	서 삼 석	서 영 교
서 영 석	서 정 숙	설 훈	성 일 종
소 병 철	소 병 훈	송 석 준	송 언 석
송 옥 주	송 재 호	신 영 대	신 원 식
신 정 훈	신 현 영	심 상 정	안 규 백
안 민 석	안 호 영	양 경 숙	양 금 희
양이원영	엄 태 영	오 기 형	오 영 환
우 상 호	위 성 곤	유 경 준	유 기 흥
유 동 수	유 의 동	유 정 주	윤 건 영
윤 관 석	윤 미 향	윤 영 덕	윤 영 석
윤 재 갑	윤 재 옥	윤 주 경	윤 준 병
윤 호 중	윤 후 덕	이 개 호	이 달 곤
이 동 주	이 만 희	이 명 수	이 병 훈
이 상 민	이 상 현	이 성 만	이 소 영
이 수 진	이수진(비)	이 양 수	이 용
이 용 선	이 용 우	이 용 호	이 원 욱
이 원 택	이 은 주	이 인 선	이 인 영

기권 의원(7인)

김 미 애	용 혜 인	유 상 범	임 이 자
정 동 만	조 명 희	허 은 아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3인)

찬성 의원(222인)

강 득 구	강 민 정	강 병 원	강 은 미
강 훈 식	고 민 정	고 용 진	구 자 근
권 명 호	권 성 동	권 인 숙	기 동 민
김 경 만	김 경 협	김 교 홍	김 남 국
김 도 읍	김 미 애	김 민 기	김 민 석
김 민 철	김 병 옥	김 병 주	김 상 훈
김 상 희	김 선 교	김 성 주	김 성 환
김 수 흥	김 승 남	김 승 수	김 승 원
김 영 배	김 영 선	김 영 진	김 영 호
김 예 지	김 용 민	김 용 판	김 용
김 원 이	김 윤 덕	김 정 호	김 종 민
김 주 영	김 진 표	김 철 민	김 학 용
김 한 규	김 한 정	김 형 동	김 홍 결
김 회 곤	김 희 국	남 인 순	노 용 호
노 웅 래	도 종 환	류 호 정	맹 성 규
문 정 복	문 진 석	민 병 덕	민 형 배
민 홍 철	박 덕 흙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상 혁	박 성 민	박 성 준	박 수 영
박 영 순	박 완 주	박 용 진	박 재 호
박 정	박 정 하	박 찬 대	박 형 수
박 홍 근	배 진 교	백 종 현	백 혜련

변재일 서동용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정숙 서설훈
성일종 소병철 소병훈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호 신원식
신정훈 신현영 심상정 안규백
안민석 안호영 양경숙 양금희
양이원영 엄태영 오기형 오영환
용혜인 우상호 위성곤 유경준
유기홍 유동수 유상범 유의동
유정주 윤건영 윤관석 윤미향
윤영덕 윤영석 윤재갑 윤재옥
윤주경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달곤 이동주 이만희
이명수 이병훈 이상민 이상현
이소영 이수진(비) 이양수
이용 이원택 이은주 이인선
이원욱 이장섭 이재명 이정문
이인영 이주환 이채익 이탄희
이종성 이학영 이해식 이현승
이태규 인재근 임병헌 임오경
이형석 인종성 임호선 장동혁
임이자 임봉민 전용기 전재수
장철민 전혜숙 정경희 정동만
전주혜 전혜숙 정일영 정점식
정성호 정청래 정춘숙 정태호
정진석 정희용 조경태 조명희
정필모 조승래 조오섭 주철현
조수진 지성호 진선미 진성준
주호영 최강욱 최기상 최승재
최영희 최재형 최종윤 최연숙
한기호 한무경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영 허은아 허종식
홍성국 홍영표 홍익표 홍정민
황보승희 황운하

기권 의원(1인)

이성만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7인)

찬성 의원(224인)

강득구 강민정 강병원 강은미
강훈식 고민정 고용진 구자근
권명호 권성동 권인숙 기동민
김경만 김경협 김교홍 김남국

김도읍 김민철 김병욱 김민기 김민석
김상희 김선교 김병주 김상훈
김수홍 김승남 김성주 김성환
김영배 김영선 김승수 김승원
김예지 김용민 김영진 김영호
김원이 김윤덕 김용관 김웅
김진표 김철민 김학용 김종민
김한정 김형동 김홍결 김한규
김희국 남인순 김용호 김희곤
도종환 류호정 맹성규 김래
민병덕 민형배 박상혁 김문정
박범계 박병석 박영순 박덕흠
박성준 박수영 박성민 박완주
박용진 박재호 박정하
박찬대 박형수 박홍근 배진교
백종현 백혜련 변재일 서동용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정숙 송석준 송언석 소병철
송재호 신영대 신원식 송옥주
안호영 양경숙 양금희 양이원영
엄태영 위성곤 유경준 유기홍
우상호 유상범 유의동 유정주
윤건영 윤관석 윤미향 윤영덕
윤영석 윤재갑 윤재옥 윤주경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달곤 이동주 이만희 이명수
이병훈 이상민 이상현 이성만
이소영 이수진(비) 이양수 이용호
이원욱 이원택 이은주 이인선
이인영 이장섭 이재명 이정문
이종성 이주환 이채익 이탄희
이태규 인재근 임병헌 임오경
이형석 인종성 임호선 장동혁
임이자 임봉민 전용기 전재수
장철민 전혜숙 정경희 정동만
전주혜 전혜숙 정일영 정점식
정성호 정청래 정춘숙 정태호
정진석 정희용 조경태 조명희
정필모 조승래 조오섭 주철현
조수진 지성호 진선미 진성준
주호영 최강욱 최기상 최승재
최영희 최재형 최종윤 최연숙
한기호 한무경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영 허은아 허종식
홍성국 홍영표 홍익표 홍정민
황보승희 황운하

주철현	주호영	지성호	진선미
진성준	천준호	최강욱	최기상
최승재	최영희	최재형	최종윤
최춘식	최혜영	한기호	한무경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영
허은아	허종식	홍성국	홍영표
홍익표	홍정민	황보승희	황운하

기권 의원(3인)

김주영 문진석 최형두
(양의원영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기권에서 찬성으로 정정)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6인)**찬성 의원(195인)**

강득구	강민정	강병원	강은미
강훈식	고민정	고용진	권성동
권인숙	기동민	김경만	김교홍
김남국	김도읍	김두관	김민기
김민석	김민철	김병욱	김병주
김상훈	김상희	김선교	김성주
김성환	김수홍	김승남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예지
김용민	김용판	김원이	김윤덕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진표
김철민	김학용	김한규	김한정
김형동	김홍걸	김희곤	김희국
남인순	노웅래	도종환	류호정
맹성규	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덕흠	박범계	박병석
박상혁	박성민	박성준	박수영
박영순	박완주	박용진	박재호
박정	박정하	박찬대	박형수
박홍근	배진교	백종헌	백혜련
변재일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정숙	설훈	성일종
소병훈	송석준	송옥주	송재호
신영대	신원식	신정훈	신현영
심상정	안규백	안민석	안호영
양경숙	양의원영	엄태영	오기형
오영환	용혜인	우상호	위성곤
유경준	유기홍	유동수	유의동
유정주	윤건영	윤관석	윤미향
윤영덕	윤영석	윤재갑	윤준병

윤후덕	이개호	이달곤	이동주
이명수	이병훈	이상민	이상현
이성만	이소영	이수진	이수진(비)
이용	이용선	이용우	이원욱
이원택	이은주	이인선	이인영
이장섭	이재명	이정문	이종성
이주환	이탄희	이학영	이해식
이현승	이형석	인재근	임병현
임오경	임이자	임종성	임호선
장철민	전봉민	전용기	전재수
전주혜	전혜숙	정동만	정성호
정운천	정일영	정점식	정진석
정청래	정춘숙	정태호	정필모
정희용	조수진	조승래	조오섭
주철현	지성호	진선미	진성준
최강욱	최기상	최승재	최영희
최재형	최종윤	최춘식	최형두
최혜영	한무경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영	허종식	홍영표
홍익표	홍정민	황운하	

반대 의원(3인)

김영선 김웅 송언석

기권 의원(18인)

구자근	권명호	김미애	노용호
서동용	소병철	양금희	유상범
윤재옥	이만희	이용호	이태규
장동혁	정경희	조경태	조명희
허은아	황보승희		

(김병욱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불참에서 찬성으로 정정)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7인)**찬성 의원(196인)**

강대식	강득구	강민정	강병원
강은미	고민정	고용진	권성동
권인숙	기동민	김경만	김교홍
김남국	김도읍	김두관	김민기
김민석	김민철	김병욱	김병주
김상훈	김상희	김선교	김성주
김성환	김수홍	김승남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예지
김용민	김용판	김원이	김윤덕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진표
김철민	김학용	김한규	김한정

김형동	김홍걸	김희곤	김희국
남인순	노응래	도종환	류호정
맹성규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덕흠	박범계
박병석	박상혁	박성민	박성준
박수영	박영순	박완주	박용진
박재호	박정	박정하	박찬대
박형수	박홍근	배진교	백종현
백혜련	변재일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정숙	설훈
성일종	송석준	송옥주	송재호
신영대	신원식	신정훈	신현영
심상정	안규백	안민석	양경숙
양이원영	엄태영	오기형	오영환
용혜인	우상호	위성곤	유정준
유기홍	유동수	유의동	유정주
윤건영	윤관석	윤미향	윤영덕
윤영석	윤재갑	윤준병	윤후덕
이개호	이달곤	이동주	이명수
이병훈	이상민	이상헌	이성만
이소영	이수진	이수진(비)	이양수
이용선	이용우	이용호	이원욱
이원택	이은주	이인선	이인영
이장섭	이재명	이정문	이종성
이주환	이탄희	이학영	이해식
이현승	이형석	인재근	임병헌
임오경	임이자	임종성	임호선
장철민	전봉민	전용기	전재수
전주혜	전혜숙	정동만	정성호
정운천	정일영	정점식	정진석
정청래	정춘숙	정태호	정필모
정희용	조수진	조승래	조오섭
주철현	지성호	진선미	진성준
최강욱	최기상	최승재	최영희
최재형	최종윤	최춘식	최혜영
한무경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영	허은아	허종식	홍성국
홍영표	홍익표	홍정민	황운하

반대 의원(4인)

김영선	김웅	송언석	장동혁
-----	----	-----	-----

기권 의원(17인)

구자근	권명호	김미애	노용호
서동용	소병철	양금희	유상범
윤재옥	윤주경	이만희	이용
이태규	정경희	조경태	조명희

황보승희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6인)

찬성 의원(206인)

장대식	장득구	장민정	장병원
강은미	고민정	고용진	구자근
권명호	권성동	권인숙	권칠승
기동민	김경만	김남국	김도읍
김두관	김미애	김민기	김민석
김민철	김병욱	김병주	김상훈
김상희	김선교	김성주	김성환
김수홍	김승남	김승원	김영배
김영선	김영진	김영호	김예지
김용민	김용관	김웅	김원이
김윤덕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진표	김철민	김학용	김한규
김한정	김형동	김홍걸	김희곤
김희국	남인순	노용호	노응래
도종환	류호정	맹성규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덕흠	박범계	박병석	박상혁
박성민	박성준	박수영	박영순
박완주	박용진	박재호	박정
박정하	박찬대	박형수	박홍근
배진교	백종현	백혜련	서동용
서범수	서삼석	서영석	서정숙
설훈	소병철	소병훈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호	신영대
신원식	신정훈	신현영	심상정
안규백	안민석	안호영	양경숙
양금희	양이원영	오기형	오영환
용혜인	위성곤	유정준	유동수
유상범	유의동	유정주	윤건영
윤관석	윤미향	윤영덕	윤영석
윤재갑	윤주경	윤준병	윤후덕
이개호	이달곤	이동주	이만희
이명수	이상민	이상헌	이성만
이소영	이수진	이양수	이용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은주
이인선	이인영	이장섭	이재명
이정문	이종성	이주환	이탄희
이태규	이학영	이해식	이현승
임이자	인재근	임병헌	임오경
	임종성	임호선	장동혁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주혜
전혜숙	정경희	정동만	정성호
정운천	정일영	정점식	정진석
정청래	정춘숙	정태호	정필모
정희용	조명희	조수진	조승래
조오섭	조응천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최강욱	최기상	최승재
최영희	최재형	최종윤	최춘식
최형두	한기호	한무경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영	허은아
허종식	홍성국	홍익표	홍정민
황보승희	황운하		

윤건영	윤관석	윤미향	윤영덕
윤영석	윤재갑	윤재욱	윤주경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달곤	이동주	이만희	이명수
이상민	이상현	이성만	이소영
이수진	이수진(비)	이양수	이용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은주
이인선	이인영	이장섭	이재명
이정문	이종성	이주환	이탄희
이태규	이학영	이해식	이현승
이형석	인재근	임병현	임오경
임이자	임종성	임호선	장동혁
장철민	전봉민	전용기	전재수
전주혜	전혜숙	정경희	정성호
정운천	정일영	정점식	정진석
정청래	정춘숙	정태호	정필모
정희용	조경태	조명희	조수진
조승래	조오섭	조응천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최강욱	최기상
최승재	최영희	최재형	최종윤
최춘식	최혜영	한기호	한무경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영
허은아	허종식	홍성국	홍영표
홍익표	홍정민	황보승희	황운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3인)

찬성 의원(212인)

강대식	강득구	강민정	강병원
강은미	고민정	고용진	구자근
권명호	권성동	권인숙	권철승
기동민	김경만	김경협	김교홍
김남국	김도읍	김두관	김미애
김민기	김민석	김민철	김병욱
김병주	김상훈	김상희	김선교
김성주	김성환	김수홍	김승남
김승원	김영배	김영선	김영진
김영호	김예지	김용민	김용판
김웅	김원이	김윤덕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진표	김철민
김학용	김한규	김한정	김형동
김홍걸	김희곤	김희국	남인순
노용호	노웅래	도종환	류호정
맹성규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덕흠	박범계
박병석	박상혁	박성민	박성준
박수영	박영순	박완주	박용진
박재호	박정	박정하	박찬대
박형수	박홍근	배진교	백종헌
백혜련	서동용	서범수	서삼석
서영석	서정숙	설훈	소병철
소병훈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호	신영대	신원식	신정훈
신현영	심상정	안규백	안민석
안호영	양경숙	양금희	양이원영
오기형	오영환	용혜인	위성곤
유경준	유동수	유의동	유정주

기권 의원(1인)

유상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2인)

찬성 의원(201인)

강득구	강민정	강병원	강은미
강훈식	고민정	고용진	구자근
권명호	권성동	권은희	권철승
기동민	김경만	김경협	김교홍
김남국	김도읍	김두관	김미애
김민기	김민철	김병욱	김병주
김상훈	김상희	김성주	김성환
김수홍	김승남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예지	김용민
김용판	김원이	김윤덕	김종민
김주영	김진표	김철민	김학용
김한규	김한정	김형동	김홍걸
김희곤	김희국	남인순	노용호
노웅래	도종환	류호정	맹성규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박덕흠	박범계	박병석	박상혁
박성민	박성준	박수영	박영순
박완주	박용진	박재호	박정
박정하	박찬대	박형수	박홍근
배진교	백종헌	백혜련	서동용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정숙	설훈	소병철	소병훈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호
신영대	신원식	신정훈	신현영
심상정	안규백	안민석	안호영
양정숙	양이원영	오기형	오영환
용혜인	우상호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유의동	유정주	윤건영
윤관석	윤미향	윤영덕	윤영석
윤재갑	윤주경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달곤	이동주
이만희	이명수	이상헌	이성만
이소영	이수진	이수진(비)	이양수
이용	이용선	이용우	이원욱
이원택	이은주	이인선	이인영
이장섭	이재명	이정문	이종성
이주환	이탄희	이학영	이해식
이현승	이형석	인재근	임병헌
임오경	임종성	임호선	장동혁
전봉민	전용기	전재수	전주혜
전혜숙	정동만	정성호	정운천
정일영	정점식	정진석	정청래
정춘숙	정태호	정필모	정희용
조경태	조명희	조수진	조승래
조오섭	조응천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최강욱	최기상	최승재
최영희	최종윤	최춘식	최형두
한기호	한무경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영	허종식	홍성국
홍영표	홍익표	홍정민	황운하
황희			

반대 의원(1인)

윤재옥

기권 의원(10인)

강대식	김선교	김웅	민홍철
이태규	임이자	장철민	최재형
허은아	황보승희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0인)

찬성 의원(216인)

강대식	강득구	강민정	강병원
강은미	강훈식	고민정	고용진
구자근	권명호	권성동	권은희
권인숙	권철승	기동민	김경만
김경협	김교홍	김남국	김도읍
김두관	김미애	김민기	김민철
김병욱	김병주	김상훈	김상희
김선교	김성주	김성환	김수홍
김승남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예지	김용민	김용관
김웅	김원이	김윤덕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진표	김철민
김학용	김한규	김한정	김형동
김홍걸	김희곤	김희국	남인순
노용호	노웅래	도종환	류호정
맹성규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덕흠	박범계	박병석
박상혁	박성민	박성준	박수영
박영순	박완주	박용진	박재호
박정	박정하	박찬대	박형수
박홍근	배진교	백종헌	백혜련
서동용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정숙	설훈	소병철
소병훈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호	신영대	신원식	신정훈
신현영	심상정	안규백	안민석
안호영	양정숙	양금희	양이원영
오기형	용혜인	우상호	위성곤
유경준	유동수	유상범	유의동
윤건영	윤관석	윤미향	윤영덕
윤영석	윤재갑	윤재욱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달곤
이동주	이만희	이명수	이상민
이상헌	이성만	이소영	이수진
이수진(비)	이양수	이용	이용선
이용우	이용호	이원욱	이원택
이은주	이인선	이인영	이장섭
이재명	이정문	이종성	이주환
이탄희	이태규	이학영	이해식
이현승	이형석	인재근	임병헌
임오경	임이자	임종성	임호선
장동혁	장철민	전봉민	전용기

전 재 수	전 주 혜	전 혜 숙	정 경 희
정 동 만	정 성 호	정 윤 천	정 일 영
정 점 식	정 진 석	정 청 래	정 춘 숙
정 태 호	정 필 모	정 희 용	조 경 태
조 명 희	조 수 진	조 승 래	조 오 섭
조 응 천	주 철 현	진 선 미	진 성 준
최 강 욱	최 기 상	최 승 재	최 영 희
최 재 형	최 종 윤	최 춘 식	최 형 두
최 혜 영	한 기 호	한 무 경	한 병 도
한 정 애	한 준 호	허 영	허 은 아
허 종 식	홍 성 국	홍 영 표	홍 익 표
홍 정 민	황보승희	황 운 하	황 희
기권 의원(4인)			
민 형 배	오 영 환	유 정 주	윤 주 경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7인)

찬성 의원(194인)

강 득 구	강 민 정	강 병 원	강 은 미
강 훈 식	고 민 정	고 용 진	구 자 근
권 명 호	권 성 동	권 은 희	권 인 숙
권 철 승	기 동 민	김 경 만	김 경 협
김 교 홍	김 남 국	김 도 읍	김 두 관
김 민 기	김 민 철	김 병 욱	김 병 주
김 상 훈	김 상 희	김 성 주	김 성 환
김 수 홍	김 승 남	김 승 원	김 영 배
김 영 진	김 영 호	김 예 지	김 용 민
김 용 판	김 응	김 원 이	김 윤 덕
김 정 호	김 종 민	김 주 영	김 진 표
김 철 민	김 한 규	김 한 정	김 홍 결
김 희 곤	김 희 국	남 인 순	노 용 호
노 응 래	도 종 환	류 호 정	문 정 복
문 진 석	민 병 덕	민 형 배	민 홍 철
박 덕 흙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상 혁
박 성 민	박 성 준	박 수 영	박 영 순
박 완 주	박 용 진	박 재 호	박 정
박 정 하	박 찬 대	박 홍 근	배 진 교
백 종 현	백 혜 련	서 동 용	서 범 수
서 삼 석	서 영 교	서 영 석	설 훈
소 병 철	소 병 훈	송 욱 주	송 재 호
신 영 대	신 원 식	신 정 훈	신 현 영
심 상 정	안 규 백	안 민 석	안 호 영
양 경 숙	양이원영	오 기 형	오 영 환
용 혜 인	우 상 호	위 성 곤	유 경 준

유 동 수	유 의 동	유 정 주	윤 건 영
윤 관 석	윤 미 향	윤 영 덕	윤 영 석
윤 재 갑	윤 재 욱	윤 주 경	윤 준 병
윤 호 중	윤 후 덕	이 개 호	이 달 곤
이 동 주	이 만 희	이 명 수	이 상 민
이 상 현	이 성 만	이 소 영	이 수 진
이수진(비)	이 양 수	이 용	이 용 선
이 용 우	이 용 호	이 원 욱	이 원 택
이 은 주	이 인 선	이 인 영	이 장 섭
이 재 명	이 정 문	이 종 성	이 탄 희
이 학 영	이 해 식	이 형 석	인 재 근
임 병 현	임 오 경	임 호 선	장 철 민
전 봉 민	전 용 기	전 재 수	전 주 혜
전 혜 숙	정 동 만	정 성 호	정 윤 천
정 일 영	정 진 석	정 청 래	정 춘 숙
정 태 호	정 필 모	조 경 태	조 승 래
조 오 섭	조 응 천	주 철 현	진 선 미
진 성 준	최 강 욱	최 기 상	최 승 재
최 영 희	최 종 윤	최 춘 식	최 형 두
최 혜 영	한 기 호	한 무 경	한 병 도
한 정 애	한 준 호	허 영	허 종 식
홍 성 국	홍 영 표	홍 익 표	홍 정 민
황 운 하	황 희		

반대 의원(3인)

김 형 동 송 석 준 임 이 자

기권 의원(20인)

강 대 식	김 미 애	김 선 교	김 학 용
박 형 수	서 정 숙	유 상 범	이 주 환
이 태 규	이 현 승	임 종 성	장 동 혁
정 경 희	정 점 식	정 희 용	조 명 희
조 수 진	최 재 형	허 은 아	황보승희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3인)

찬성 의원(197인)

강 득 구	강 민 정	강 병 원	강 은 미
강 훈 식	고 민 정	고 용 진	구 자 근
권 명 호	권 은 희	권 인 숙	권 철 승
기 동 민	김 경 만	김 경 협	김 교 홍
김 남 국	김 도 읍	김 두 관	김 민 기
김 민 석	김 민 철	김 병 욱	김 병 주
김 상 훈	김 상 희	김 성 주	김 성 환
김 수 홍	김 승 남	김 승 원	김 영 배
김 영 진	김 영 호	김 예 지	김 용 민
김 용 판	김 원 이	김 윤 덕	김 정 호

김종민	김주영	김진표	김철민
김학용	김한규	김한정	김형동
김홍걸	김희곤	김희국	남인순
노용호	노웅래	도종환	류호정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덕흠	박범계	박병석
박상혁	박성민	박성준	박영순
박완주	박용진	박재호	박정
박정하	박찬대	박형수	박홍근
배진교	백종헌	백혜련	서동용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정숙	설훈	소병철	소병훈
송옥주	송재호	신영대	신원식
신정훈	신현영	심상정	안규백
안민석	안호영	양정숙	양금희
양이원영	오기형	오영환	용혜인
우상호	위성곤	유동수	유의동
유정주	윤건영	윤관석	윤미향
윤영덕	윤영석	윤재갑	윤재옥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달곤	이동주	이만희	이명수
이상민	이상헌	이성만	이소영
이수진	이수진(비)	이양수	이용
이용선	이용우	이용호	이원욱
이원택	이은주	이인선	이인영
이장섭	이재명	이정문	이종성
이탄희	이태규	이학영	이해식
이현승	이형석	인재근	임병헌
임오경	임종성	임호선	장동혁
장철민	전봉민	전용기	전재수
전주혜	전혜숙	정성호	정운천
정일영	정점식	정진석	정청래
정춘숙	정태호	정필모	정희용
조경태	조승래	조오섭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최강욱	최기상
최승재	최영희	최종윤	최춘식
최형두	한기호	한무경	한병도
한정애	허영	허종식	홍성국
홍영표	홍익표	홍정민	황운하
황희			

반대 의원(1인)

권성동

기권 의원(15인)

강대식	김미애	김선교	김웅
박수영	송석준	윤주경	이주환

임이자	조명희	조수진	최재형
한준호	허은아	황보승희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7인)

찬성 의원(215인)

강대식	강득구	강민정	강병원
강은미	강훈식	고민정	고용진
구자근	권명호	권성동	권은희
권인숙	권철승	기동민	김경만
김경협	김교홍	김남국	김도읍
김두관	김미애	김민기	김민석
김민철	김병욱	김병주	김상훈
김상희	김선교	김성주	김성환
김수홍	김승남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예지	김용민
김용판	김웅	김원이	김윤덕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진표
김철민	김학용	김한규	김한정
김형동	김홍걸	김희곤	김희국
남인순	노용호	노웅래	도종환
류호정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덕흠	박범계
박병석	박상혁	박성민	박성준
박수영	박영순	박완주	박용진
박재호	박정	박정하	박찬대
박형수	박홍근	배진교	백종헌
백혜련	서동용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정숙	설훈
소병철	소병훈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호	신영대	신원식
신정훈	신현영	심상정	안규백
안민석	안호영	양정숙	양금희
양이원영	오기형	오영환	용혜인
우상호	위성곤	유동수	유의동
유정주	윤건영	윤관석	윤미향
윤영덕	윤영석	윤재갑	윤재옥
윤주경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달곤	이동주	이만희
이명수	이상헌	이성만	이소영
이수진	이수진(비)	이양수	이용
이용선	이용우	이용호	이원욱
이원택	이은주	이인선	이인영
이장섭	이재명	이정문	이종성
이주환	이탄희	이태규	이학영

이 해 식	이 헌 승	이 형 석	인 재 근
임 병 헌	임 오 경	임 이 자	임 종 성
임 호 선	장 동 혁	장 철 민	전 봉 민
전 용 기	전 재 수	전 주 혜	전 혜 숙
정 경 회	정 성 호	정 윤 천	정 일 영
정 점 식	정 진 석	정 청 래	정 춘 숙
정 태 호	정 필 모	정 희 용	조 경 태
조 명 회	조 수 진	조 승 래	조 오 섭
주 철 현	진 선 미	진 성 준	최 강 욱
최 기 상	최 승 재	최 영 희	최 재 형
최 종 윤	최 춘 식	최 형 두	최 혜 영
한 기 호	한 무 경	한 병 도	한 정 애
한 준 호	허 영	허 은 아	허 종 식
홍 성 국	홍 영 표	홍 익 표	홍 정 민
황보승희	황 운 하	황 희	

반대 의원(1인)

김 영 선

기권 의원(1인)

최 연 숙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투표 의원(215인)****찬성 의원(211인)**

강 대 식	강 득 구	강 민 정	강 병 원
강 은 미	강 훈 식	고 민 정	고 용 진
구 자 근	권 명 호	권 성 동	권 은 희
권 인 숙	권 철 승	기 동 민	김 경 만
김 경 협	김 교 홍	김 남 국	김 도 읍
김 두 관	김 민 기	김 민 석	김 민 철
김 병 욱	김 병 주	김 상 훈	김 상 희
김 선 교	김 성 주	김 성 환	김 수 흥
김 승 남	김 승 원	김 영 배	김 영 진
김 영 호	김 예 지	김 용 민	김 용 판
김 웅	김 윤 덕	김 정 호	김 종 민
김 주 영	김 진 표	김 철 민	김 학 용
김 한 규	김 한 정	김 형 동	김 홍 결
김 희 곤	김 희 국	남 인 순	노 용 호
노 웅 래	도 종 환	류 호 정	문 정 복
문 진 석	민 병 덕	민 형 배	민 홍 철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상 혁	박 성 민
박 성 준	박 수 영	박 영 순	박 완 주
박 용 진	박 재 호	박 정	박 정 하
박 찬 대	박 형 수	박 홍 근	배 진 교
백 종 현	백 혜련	서 동 용	서 범 수
서 삼 석	서 영 교	서 영 석	서 정 숙

설 훈	소 병 철	소 병 훈	송 석 준
송 언 석	송 옥 주	송 재 호	신 영 대
신 원 식	신 정 훈	신 현 영	심 상 정
안 규 백	안 민 석	안 호 영	양 경 숙
양 금 희	양이원영	오 기 형	오 영 환
용 혜 인	우 상 호	위 성 곤	유 동 수
유 의 동	유 정 주	윤 건 영	윤 관 석
윤 미 향	윤 영 덕	윤 영 석	윤 재 갑
윤 재 욱	윤 주 경	윤 준 병	윤 호 중
윤 후 덕	이 개 호	이 달 곤	이 동 주
이 만 희	이 명 수	이 상 현	이 성 만
이 소 영	이 수 진	이수진(비)	이 양 수
이 용	이 용 선	이 용 우	이 용 호
이 원 욱	이 원 택	이 은 주	이 인 선
이 인 영	이 장 섭	이 재 명	이 정 문
이 종 성	이 주 환	이 탄 희	이 태 규
이 학 영	이 해 식	이 헌 승	이 형 석
인 재 근	임 병 헌	임 오 경	임 이 자
임 종 성	임 호 선	장 동 혁	장 철 민
전 봉 민	전 용 기	전 재 수	전 주 혜
전 혜 숙	정 경 회	정 성 호	정 윤 천
정 일 영	정 점 식	정 진 석	정 청 래
정 춘 숙	정 태 호	정 필 모	정 희 용
조 경 태	조 명 회	조 수 진	조 승 래
조 오 섭	주 철 현	진 선 미	진 성 준
최 강 욱	최 기 상	최 승 재	최 영 희
최 재 형	최 종 윤	최 형 두	최 혜 영
한 기 호	한 무 경	한 병 도	한 정 애
한 준 호	허 영	허 은 아	허 종 식
홍 성 국	홍 영 표	홍 익 표	홍 정 민
황보승희	황 운 하	황 희	

반대 의원(2인)

김 영 선 최 연 숙

기권 의원(2인)

김 미 애 최 춘 식

**○청년 지원을 위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투표 의원(216인)****찬성 의원(215인)**

강 대 식	강 득 구	강 민 정	강 병 원
강 은 미	강 훈 식	고 민 정	고 용 진
구 자 근	권 명 호	권 성 동	권 은 희
권 인 숙	권 철 승	기 동 민	김 경 만
김 경 협	김 교 홍	김 남 국	김 도 읍

김 두 관	김 미 애	김 민 기	김 민 석
김 민 철	김 병 욱	김 병 주	김 상 훈
김 상 희	김 선 교	김 성 주	김 성 환
김 수 홍	김 승 남	김 승 원	김 영 배
김 영 선	김 영 진	김 영 호	김 예 지
김 용 민	김 용 판	김 용	김 윤 덕
김 정 호	김 종 민	김 주 영	김 진 표
김 철 민	김 학 용	김 한 규	김 한 정
김 형 동	김 홍 결	김 회 곤	김 회 국
남 인 순	노 용 호	노 웅 래	도 종 환
류 호 정	문 정 복	문 진 석	민 병 덕
민 형 배	민 홍 철	박 덕 흠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상 혁	박 성 민	박 성 준
박 수 영	박 영 순	박 완 주	박 용 진
박 재 호	박 정	박 정 하	박 찬 대
박 형 수	박 홍 근	배 진 교	백 종 헌
백 해 련	서 동 용	서 범 수	서 삼 석
서 영 교	서 영 석	서 정 숙	설 훈
소 병 철	소 병 훈	송 석 준	송 언 석
송 옥 주	송 재 호	신 영 대	신 원 식
신 정 훈	신 현 영	심 상 정	안 규 백
안 민 석	안 호 영	양 경 숙	양 금 회
양이원영	오 기 형	오 영 환	용 혜 인
우 상 호	위 성 곤	유 동 수	유 의 동
유 정 주	윤 건 영	윤 관 석	윤 미 향
윤 영 덕	윤 영 석	윤 재 갑	윤 재 옥
윤 주 경	윤 준 병	윤 호 중	윤 후 덕
이 개 호	이 달 곤	이 동 주	이 만 회
이 명 수	이 상 헌	이 성 만	이 소 영
이 수 진	이수진(비)	이 양 수	이 용
이 용 선	이 용 우	이 용 호	이 원 욱
이 원 택	이 은 주	이 인 선	이 인 영
이 장 섭	이 재 명	이 정 문	이 종 성
이 주 환	이 탄 희	이 태 규	이 학 영
이 해 식	이 현 승	이 형 석	인 재 근
임 병 현	임 오 경	임 이 자	임 종 성
임 호 선	장 동 혁	장 철 민	전 봉 민
전 용 기	전 재 수	전 주 혜	전 혜 숙
정 경 희	정 동 만	정 성 호	정 운 천
정 일 영	정 점 식	정 진 석	정 청 래
정 춘 숙	정 태 호	정 필 모	정 회 용
조 경 태	조 명 희	조 수 진	조 승 래
조 오 섭	주 철 현	진 선 미	진 성 준
최 강 욱	최 기 상	최 승 재	최 연 숙
최 영 희	최 재 형	최 중 윤	최 형 두

최 해 영	한 무 경	한 병 도	한 정 애
한 준 호	허 영	허 은 아	허 종 식
홍 성 국	홍 영 표	홍 익 표	홍 정 민
황보승희	황 운 하	황 희	

기권 의원(1인)

최 춘 식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투표 의원(216인)

찬성 의원(210인)

강 대 식	강 득 구	강 민 정	강 병 원
강 은 미	강 훈 식	고 민 정	구 자 근
권 명 호	권 성 동	권 은 희	권 인 숙
권 칠 승	기 동 민	김 경 만	김 경 협
김 교 홍	김 남 국	김 도 읍	김 두 관
김 민 기	김 민 석	김 민 철	김 병 욱
김 병 주	김 상 훈	김 상 희	김 선 교
김 성 주	김 성 환	김 수 홍	김 승 남
김 승 원	김 영 배	김 영 선	김 영 진
김 영 호	김 예 지	김 용 민	김 용 판
김 용	김 윤 덕	김 정 호	김 종 민
김 주 영	김 진 표	김 철 민	김 학 용
김 한 규	김 한 정	김 형 동	김 홍 결
김 회 곤	김 회 국	남 인 순	노 용 호
노 웅 래	도 종 환	류 호 정	문 정 복
문 진 석	민 병 덕	민 홍 철	박 덕 흠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상 혁	박 성 준
박 성 중	박 수 영	박 영 순	박 완 주
박 용 진	박 재 호	박 정	박 정 하
박 찬 대	박 형 수	박 홍 근	배 진 교
백 종 헌	백 해 련	서 동 용	서 범 수
서 삼 석	서 영 교	서 영 석	서 정 숙
설 훈	소 병 철	소 병 훈	송 석 준
송 언 석	송 옥 주	송 재 호	신 영 대
신 원 식	신 정 훈	신 현 영	심 상 정
안 규 백	안 민 석	안 호 영	양 경 숙
양 금 회	양이원영	오 기 형	오 영 환
용 혜 인	우 상 호	위 성 곤	유 동 수
유 의 동	유 정 주	윤 건 영	윤 관 석
윤 미 향	윤 영 덕	윤 영 석	윤 재 갑
윤 재 옥	윤 주 경	윤 준 병	윤 호 중
윤 후 덕	이 개 호	이 달 곤	이 동 주
이 만 회	이 명 수	이 상 헌	이 성 만
이 소 영	이 수 진	이수진(비)	이 양 수

이 용	이 용 선	이 용 우	이 용 호
이 원 옥	이 원 택	이 은 주	이 인 선
이 인 영	이 장 섭	이 재 명	이 정 문
이 종 성	이 주 환	이 탄 희	이 태 규
이 학 영	이 해 식	이 현 승	이 형 석
인 재 근	임 병 헌	임 오 경	임 이 자
임 종 성	임 호 선	장 동 혁	장 철 민
전 봉 민	전 용 기	전 재 수	전 주 혜
전 혜 숙	정 경 희	정 동 만	정 성 호
정 운 천	정 일 영	정 점 식	정 진 석
정 청 래	정 춘 숙	정 태 호	정 필 모
정 희 용	조 경 태	조 승 래	조 오 섭
주 철 현	진 선 미	진 성 준	최 강 욱
최 기 상	최 승 재	최 연 숙	최 영 희
최 종 윤	최 춘 식	최 형 두	최 혜 영
한 기 호	한 무 경	한 병 도	한 정 애
한 준 호	허 영	허 종 식	홍 성 국
홍 영 표	홍 익 표	홍 정 민	황보승희
황 운 하	황 희		

기권 의원(6인)

고 용 진	김 미 애	민 형 배	조 명 희
조 수 진	최 재 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투표 의원(216인)****찬성 의원(215인)**

강 대 식	강 득 구	강 민 정	강 병 원
강 은 미	강 훈 식	고 민 정	고 용 진
구 자 근	권 명 호	권 성 동	권 은 희
권 인 숙	권 칠 승	기 동 민	김 경 만
김 경 협	김 교 홍	김 남 국	김 도 읍
김 두 관	김 미 애	김 민 기	김 민 석
김 민 철	김 병 욱	김 병 주	김 상 훈
김 상 희	김 선 교	김 성 주	김 성 환
김 수 흥	김 승 남	김 승 원	김 영 배
김 영 선	김 영 진	김 영 호	김 예 지
김 용 민	김 용 판	김 웅	김 윤 덕
김 정 호	김 종 민	김 주 영	김 진 표
김 철 민	김 학 용	김 한 규	김 한 정
김 형 동	김 홍 길	김 희 곤	김 희 국
남 인 순	노 용 호	노 웅 래	도 종 환
류 호 정	문 정 복	문 진 석	민 병 덕
민 형 배	민 홍 철	박 덕 흙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상 혁	박 성 준	박 성 중
박 수 영	박 영 순	박 완 주	박 용 진

박 재 호	박 정	박 정 하	박 찬 대
박 형 수	박 홍 근	배 진 교	백 종 헌
백 혜 련	서 동 용	서 범 수	서 삼 석
서 영 교	서 영 석	서 정 숙	설 훈
소 병 철	소 병 훈	송 석 준	송 언 석
송 옥 주	송 재 호	신 영 대	신 원 식
신 정 훈	신 현 영	심 상 정	안 규 백
안 민 석	안 호 영	양 경 숙	양 금 희
양이원영	오 기 형	오 영 환	우 상 호
위 성 곤	유 동 수	유 의 동	유 정 주
윤 건 영	윤 관 석	윤 미 향	윤 영 덕
윤 영 석	윤 재 갑	윤 재 욱	윤 주 경
윤 준 병	윤 호 중	윤 후 덕	이 개 호
이 달 곤	이 동 주	이 만 희	이 명 수
이 상 현	이 성 만	이 소 영	이 수 진
이수진(비)	이 양 수	이 용	이 용 선
이 용 우	이 용 호	이 원 욱	이 원 택
이 은 주	이 인 선	이 인 영	이 장 섭
이 재 명	이 정 문	이 종 성	이 주 환
이 탄 희	이 태 규	이 학 영	이 해 식
이 현 승	이 형 석	인 재 근	임 병 헌
임 오 경	임 이 자	임 종 성	임 호 선
장 동 혁	장 철 민	전 봉 민	전 용 기
전 재 수	전 주 혜	전 혜 숙	정 경 희
정 동 만	정 성 호	정 운 천	정 일 영
정 점 식	정 진 석	정 청 래	정 춘 숙
정 태 호	정 필 모	정 희 용	조 경 태
조 명 희	조 수 진	조 승 래	조 오 섭
주 철 현	진 선 미	진 성 준	최 강 욱
최 기 상	최 승 재	최 영 희	최 재 형
최 종 윤	최 춘 식	최 형 두	최 혜 영
한 기 호	한 무 경	한 병 도	한 정 애
한 준 호	허 영	허 은 아	허 종 식
홍 성 국	홍 영 표	홍 익 표	홍 정 민
황보승희	황 운 하	황 희	

기권 의원(1인)

용 혜 인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투표 의원(215인)****찬성 의원(215인)**

강 대 식	강 득 구	강 민 정	강 병 원
강 은 미	강 훈 식	고 민 정	고 용 진
구 자 근	권 명 호	권 성 동	권 은 희
권 인 숙	권 칠 승	기 동 민	김 경 만

김 경 협	김 교 홍	김 남 국	김 도 읍
김 두 관	김 미 애	김 민 기	김 민 석
김 민 철	김 병 욱	김 병 주	김 상 훈
김 상 희	김 선 교	김 성 주	김 성 환
김 수 홍	김 승 남	김 승 원	김 영 배
김 영 선	김 영 진	김 영 호	김 예 지
김 용 민	김 용 판	김 용	김 윤 덕
김 정 호	김 종 민	김 주 영	김 진 표
김 철 민	김 학 용	김 한 규	김 한 정
김 형 동	김 홍 결	김 희 곤	김 희 국
남 인 순	노 용 호	노 웅 래	도 종 환
류 호 정	문 정 복	문 진 석	민 병 덕
민 형 배	민 홍 철	박 덕 흙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상 혁	박 성 준	박 성 중
박 수 영	박 영 순	박 완 주	박 용 진
박 재 호	박 정	박 정 하	박 찬 대
박 형 수	박 홍 근	배 진 교	백 종 헌
백 혜 련	서 동 용	서 범 수	서 삼 석
서 영 교	서 영 석	설 훈	소 병 철
소 병 훈	송 석 준	송 언 석	송 옥 주
송 재 호	신 영 대	신 원 식	신 정 훈
신 현 영	심 상 정	안 규 백	안 민 석
안 호 영	양 경 숙	양 금 희	양이원영
오 기 형	오 영 환	용 혜 인	우 상 호
위 성 곤	유 동 수	유 의 동	유 정 주
윤 건 영	윤 관 석	윤 미 향	윤 영 덕
윤 영 석	윤 재 갑	윤 재 옥	윤 주 경
윤 준 병	윤 호 중	윤 후 덕	이 개 호
이 달 곤	이 동 주	이 만 희	이 명 수
이 상 헌	이 성 만	이 소 영	이 수 진
이수진(비)	이 양 수	이 용	이 용 선
이 용 우	이 용 호	이 원 욱	이 원 택
이 은 주	이 인 선	이 인 영	이 장 섭
이 재 명	이 정 문	이 종 성	이 주 환
이 탄 희	이 태 규	이 학 영	이 해 식
이 현 승	이 형 석	인 재 근	임 병 헌
임 오 경	임 이 자	임 종 성	임 호 선
장 동 혁	장 철 민	전 봉 민	전 용 기
전 재 수	전 주 혜	전 혜 숙	정 경 회
정 동 만	정 성 호	정 윤 천	정 일 영
정 점 식	정 진 석	정 청 래	정 춘 숙
정 태 호	정 필 모	정 희 용	조 경 태
조 명 희	조 수 진	조 승 래	조 오 섭
주 철 현	조 진 선	조 진 성	최 강 욱
최 기 상	최 승 재	최 영 회	최 재 형

최 종 윤	최 춘 식	최 형 두	최 혜 영
한 기 호	한 무 경	한 병 도	한 정 애
한 준 호	허 영	허 은 아	허 중 식
홍 성 국	홍 영 표	홍 익 표	홍 정 민
황보승희	황 운 하	황 회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2인)

찬성 의원(200인)

강 대 식	강 득 구	강 민 정	강 병 원
강 은 미	강 훈 식	고 민 정	고 용 진
구 자 근	권 성 동	권 인 숙	권 칠 승
기 동 민	김 경 만	김 경 협	김 교 홍
김 남 국	김 도 읍	김 미 애	김 민 기
김 민 철	김 병 욱	김 병 주	김 상 훈
김 상 희	김 선 교	김 성 주	김 성 환
김 수 홍	김 승 남	김 영 배	김 영 선
김 영 진	김 영 호	김 예 지	김 용 민
김 용 판	김 용	김 윤 덕	김 정 호
김 종 민	김 주 영	김 진 표	김 철 민
김 학 용	김 한 규	김 한 정	김 형 동
김 홍 결	김 희 국	남 인 순	노 용 호
노 웅 래	도 종 환	류 호 정	문 정 복
문 진 석	민 병 덕	민 홍 철	박 덕 흙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상 혁	박 성 준
박 성 중	박 수 영	박 영 순	박 완 주
박 용 진	박 재 호	박 정	박 정 하
박 찬 대	박 형 수	박 홍 근	배 진 교
백 종 헌	백 혜 련	서 동 용	서 범 수
서 삼 석	서 영 교	서 영 석	설 훈
소 병 철	송 석 준	송 언 석	송 원 식
송 옥 주	신 영 대	심 상 정	안 규 백
신 정 훈	신 현 영	안 호 영	양 경 숙
안 민 석	안 병 길	오 기 형	용 혜 인
양이원영	오 기 형	유 동 수	윤 건 영
위 성 곤	유 동 수	유 영 덕	윤 영 석
윤 관 석	윤 미 향	윤 주 경	윤 준 병
윤 재 갑	윤 재 옥	이 개 호	이 동 주
윤 호 중	이 명 수	이 상 헌	이 성 만
이 만 희	이 수 진	이 용 우	이 용 호
이 소 영	이 용 선	이 은 주	이 인 영
이 용	이 원 택	이 정 문	이 종 성
이 원 욱	이 재 명	이 태 규	이 학 영
이 장 섭	이 탄 희	이 형 석	인 재 근
이 주 환	이 해 식	임 병 헌	임 호 선
이 임	임 병 헌	전 용 기	정 경 회
이 전	전 용 기	정 일 영	정 춘 숙
이 조	조 경 태	조 오 섭	최 강 욱
이 최	최 재 형		

이 해 식	이 헌 승	이 형 석	인 재 근
임 병 헌	임 오 경	임 이 자	임 호 선
장 동 혁	장 철 민	전 봉 민	전 용 기
전 재 수	전 주 혜	전 혜 숙	정 동 만
정 성 호	정 윤 천	정 일 영	정 점 식
정 진 석	정 청 래	정 춘 숙	정 태 호
정 필 모	정 희 용	조 경 태	조 명 희
조 수 진	조 승 래	조 오 섭	주 철 현
진 선 미	진 성 준	최 강 옥	최 기 상
최 영 희	최 재 형	최 종 윤	최 춘 식
최 형 두	최 혜 영	한 기 호	한 무 경
한 병 도	한 정 애	한 준 호	허 영
허 은 아	허 종 식	홍 성 국	홍 익 표
홍 정 민	황보승희	황 운 하	황 희

기권 의원(2인)

민 형 배 양 금 희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투표 의원(204인)****찬성 의원(200인)**

강 대 식	강 득 구	강 민 정	강 병 원
강 은 미	고 민 정	고 용 진	구 자 근
권 성 동	권 인 숙	권 철 승	기 동 민
김 경 만	김 경 협	김 교 홍	김 남 국
김 도 읍	김 미 애	김 민 기	김 민 석
김 민 철	김 병 옥	김 병 주	김 상 훈
김 상 희	김 선 교	김 성 주	김 성 환
김 수 홍	김 승 남	김 영 배	김 영 선
김 영 진	김 영 호	김 예 지	김 용 민
김 용 판	김 웅	김 윤 덕	김 정 호
김 종 민	김 주 영	김 진 표	김 학 용
김 한 규	김 한 정	김 형 동	김 홍 결
김 희 국	남 인 순	노 용 호	노 웅 래
도 중 환	류 호 정	문 정 복	민 병 덕
민 홍 철	박 덕 흙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상 혁	박 성 준	박 성 중	박 수 영
박 영 순	박 완 주	박 용 진	박 재 호
박 정	박 정 하	박 찬 대	박 형 수
박 홍 근	배 진 교	백 종 헌	백 혜 련
서 동 용	서 범 수	서 삼 석	서 영 교
서 영 석	서 정 숙	설 훈	소 병 철
소 병 훈	송 석 준	송 언 석	송 옥 주
송 재 호	신 영 대	신 원 식	신 정 훈
신 현 영	심 상 정	안 규 백	안 민 석
안 병 길	안 호 영	양 경 숙	양 금 희

양이원영	오 기 형	용 혜 인	우 상 호
위 성 곤	유 동 수	유 정 주	윤 건 영
윤 관 석	윤 미 향	윤 영 석	윤 재 갑
윤 재 옥	윤 주 경	윤 준 병	윤 호 중
윤 후 덕	이 개 호	이 동 주	이 만 회
이 명 수	이 상 현	이 성 만	이 소 영
이수진(비)	이 양 수	이 용	이 용 선
이 용 우	이 용 호	이 원 옥	이 원 택
이 은 주	이 인 영	이 장 섭	이 재 명
이 정 문	이 종 성	이 주 환	이 탄 희
이 태 규	이 학 영	이 해 식	이 헌 승
이 형 석	인 재 근	임 병 헌	임 오 경
임 이 자	임 호 선	장 동 혁	장 철 민
전 봉 민	전 용 기	전 재 수	전 주 혜
전 혜 숙	정 경 희	정 동 만	정 성 호
정 윤 천	정 일 영	정 점 식	정 진 석
정 청 래	정 춘 숙	정 태 호	정 필 모
정 희 용	조 경 태	조 명 희	조 수 진
조 승 래	조 오 섭	주 철 현	진 선 미
진 성 준	최 강 옥	최 기 상	최 연 숙
최 영 희	최 재 형	최 종 윤	최 춘 식
최 형 두	한 기 호	한 무 경	한 병 도
한 정 애	한 준 호	허 영	허 은 아
허 종 식	홍 성 국	홍 영 표	홍 익 표
홍 정 민	황보승희	황 운 하	황 희

기권 의원(4인)

김 철 민 민 형 배 오 영 환 윤 영 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투표 의원(206인)****찬성 의원(203인)**

강 대 식	강 득 구	강 민 정	강 병 원
강 은 미	강 훈 식	고 민 정	고 용 진
구 자 근	권 성 동	권 인 숙	권 철 승
기 동 민	김 경 만	김 경 협	김 교 홍
김 남 국	김 도 읍	김 미 애	김 민 기
김 민 석	김 민 철	김 병 옥	김 병 주
김 상 훈	김 상 희	김 선 교	김 성 주
김 성 환	김 수 홍	김 승 남	김 영 배
김 영 선	김 영 진	김 영 호	김 예 지
김 용 민	김 용 판	김 웅	김 윤 덕
김 정 호	김 종 민	김 주 영	김 진 표
김 철 민	김 학 용	김 한 규	김 한 정
김 형 동	김 홍 결	김 희 국	남 인 순

노용호 노웅래 도종환 류호정
 문정복 민병덕 민홍철 박범계
 박병석 박상혁 박성준 박성중
 박수영 박영순 박완주 박용진
 박재호 박정 박정하 박찬대
 박형수 박홍근 배진교 백종헌
 백혜련 서동용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정숙 설훈
 소병철 소병훈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호 신영대 신원식
 신정훈 신현영 심상정 안규백
 안민석 안병길 안호영 양정숙
 양금희 양이원영 오기형 용혜인
 우상호 위성곤 유동수 유정주
 윤건영 윤관석 윤미향 윤영덕
 윤영석 윤재갑 윤재옥 윤주경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동주 이만희 이명수 이상헌
 이성만 이소영 이수진 이양수
 이용 이용선 이용우 이영호
 이원욱 이원택 이은주 이인선
 이인영 이장섭 이재명 이정문
 이종성 이해식 이현승 이형석
 이학영 임병헌 임오경 임이자
 인재근 임병헌 장동혁 장철민
 임호선 장재수 전주혜 전혜숙
 전용기 정동만 정성호 정운천
 정경희 정점식 정진석 정청래
 정일영 정태호 정필모 정희용
 정춘숙 정태호 조수진 조승래
 조경태 조명희 진선미 최영희
 조오섭 주철현 최연숙 최혜영
 최강욱 최기상 최춘식 최정애
 최재형 최종윤 한병도 한종식
 한기호 한무영 허은아 허정민
 한준호 허영표 홍익표 홍정민
 홍성국 홍영표 황운하 황희

기권 의원(3인)

민형배 오영환 이수진(비)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6인)

찬성 의원(206인)

강대식 강득구 강민정 강병원

강은미 강훈식 고민정 고용진
 구자근 권성동 권인숙 권칠승
 기동민 김경만 김경협 김교홍
 김남국 김도읍 김미애 김민기
 김민석 김민철 김병욱 김병주
 김상희 김선교 김성주 김성환
 김수홍 김승남 김영배 김영선
 김영진 김영호 김예지 김용민
 김용판 김웅 김윤덕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진표 김철민
 김학용 김한규 김한정 김형동
 김홍걸 김희국 남인순 노용호
 노웅래 도종환 류호정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덕흠 박범계 박병석 박상혁
 박성준 박성중 박수영 박영순
 박완주 박용진 박재호 박정근
 박정하 박찬대 박형수 박홍근
 배진교 백종헌 백혜련 서동용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설훈 소병철 송옥주 송석준
 송언석 신정훈 신현영 심상정
 안규백 안민석 안병길 안호영
 양정숙 양금희 양이원영 오기형
 용혜인 유동수 유정주 위성곤
 윤건영 윤관석 윤미향 윤영덕
 윤영석 윤재갑 윤재옥 윤주경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동주 이만희 이명수 이상헌
 이성만 이소영 이수진 이양수
 이용 이용선 이용우 이영호
 이원욱 이원택 이은주 이인선
 이인영 이장섭 이재명 이정문
 이종성 이해식 이현승 이형석
 이학영 임병헌 임오경 임이자
 인재근 임병헌 장동혁 장철민
 임호선 장재수 전주혜 전혜숙
 전용기 정동만 정성호 정운천
 정경희 정점식 정진석 정청래
 정일영 정태호 정필모 정희용
 정춘숙 정태호 조수진 조승래
 조경태 조명희 진선미 최영희
 조오섭 주철현 최연숙 최혜영
 최강욱 최기상 최춘식 최정애
 최재형 최종윤 한병도 한종식
 한기호 한무영 허은아 허정민
 한준호 허영표 홍익표 홍정민
 홍성국 홍영표 황운하 황희

최기상	최연숙	최영희	최재형
최종윤	최춘식	최형두	한기호
한무경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영	허은아	허종식	홍성국
홍영표	홍익표	홍정민	황보승희
황운하	황희		

이정문	이종성	이주환	이탄희
이태규	이학영	이해식	이헌승
이형석	인재근	임병현	임오경
임호선	장동혁	장철민	전봉민
전용기	전재수	전주혜	전혜숙
정경희	정동만	정성호	정운천
정일영	정점식	정진석	정청래
정춘숙	정태호	정필모	정희용
조경태	조승래	조오섭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최강욱	최기상
최연숙	최영희	최재형	최종윤
최춘식	최형두	최혜영	한기호
한무경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영	허은아	허종식	홍성국
홍영표	홍익표	홍정민	황보승희
황희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6인)

찬성 의원(201인)

강대식	강득구	강민정	강병원
강은미	강훈식	고민정	고용진
구자근	권성동	권인숙	권칠승
기동민	김경만	김경협	김교홍
김남국	김도읍	김미애	김민기
김민석	김민철	김병욱	김병주
김상훈	김상희	김선교	김성주
김성환	김수홍	김승남	김영배
김영선	김영진	김영호	김예지
김용민	김용판	김윤택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진표	김철민
김학용	김한규	김한정	김형동
김홍걸	김희국	남인순	노용호
노웅래	도종환	류호정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범계	박병석	박상혁	박성준
박성중	박수영	박영순	박완주
박용진	박재호	박정	박정하
박찬대	박형수	박홍근	배진교
백종헌	백혜련	서동용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정숙
설훈	소병철	소병훈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호	신영대
신원식	신정훈	신현영	심상정
안규백	안민석	안호영	양경숙
양금희	양이원영	오기형	오영환
용혜인	우상호	위성곤	유동수
유정주	윤건영	윤관석	윤미향
윤영덕	윤영석	윤재갑	윤재옥
윤주경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동주	이만희	이명수
이상헌	이성만	이소영	이수진
이수진(비)	이양수	이용	이용우
이용호	이원욱	이원택	이은주
이인선	이인영	이장섭	이재명

기권 의원(5인)

김웅 안병길 임이자 조명희
조수진

(이수진(비)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기권에서 찬성으로 정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4인)

찬성 의원(196인)

강대식	강득구	강민정	강병원
강은미	강훈식	고민정	고용진
구자근	권성동	권인숙	권칠승
기동민	김경만	김경협	김교홍
김남국	김도읍	김미애	김민기
김민석	김민철	김병욱	김병주
김상훈	김상희	김선교	김성주
김성환	김수홍	김승남	김영배
김영선	김영진	김영호	김예지
김용민	김용판	김웅	김윤택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진표
김학용	김한규	김한정	김형동
김홍걸	김희국	남인순	노용호
노웅래	도종환	류호정	문정복
민병덕	민홍철	박범계	박병석
박상혁	박성준	박수영	박영순
박완주	박용진	박재호	박정
박정하	박찬대	박형수	박홍근
배진교	백종헌	백혜련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정숙

설	훈	소 병 철	소 병 훈	송 석 준
송 언 석	송 옥 주	송 재 호	송 신 영	신 대
신 원 식	신 정 훈	신 현 영	심 상 정	
안 규 백	안 민 석	안 병 길	안 호 영	
양 경 숙	양 금 회	양이원영	오 기 형	
오 영 환	용 혜 인	우 상 호	위 성 곤	
유 동 수	유 정 주	윤 관 석	윤 미 향	
윤 영 덕	윤 영 석	윤 재 갑	윤 재 옥	
윤 주 경	윤 준 병	윤 호 중	이 개 호	
이 동 주	이 만 희	이 명 수	이 상 현	
이 소 영	이 수 진	이 양 수	이 용	
이 용 선	이 용 우	이 용 호	이 원 욱	
이 원 택	이 은 주	이 인 선	이 인 영	
이 장 섭	이 재 명	이 정 문	이 종 성	
이 주 환	이 탄 희	이 태 규	이 학 영	
이 해 식	이 현 승	이 형 석	인 재 근	
임 병 현	임 오 경	임 이 자	임 호 선	
장 동 혁	장 철 민	전 봉 민	전 용 기	
전 재 수	전 주 혜	전 혜 숙	정 경 회	
정 동 만	정 성 호	정 운 천	정 일 영	
정 점 식	정 진 석	정 청 래	정 춘 숙	
정 태 호	정 필 모	정 희 용	조 경 태	
조 명 희	조 수 진	조 승 래	조 오 섭	
주 철 현	진 선 미	진 성 준	최 강 욱	
최 기 상	최 연 숙	최 영 희	최 재 형	
최 종 윤	최 춘 식	최 형 두	한 무 경	
한 병 도	한 정 애	한 준 호	허 영	
허 은 아	허 종 식	홍 성 국	홍 영 표	
홍 익 표	홍 정 민	황보승희	황 회	

기권 의원(8인)

김 철 민	문 진 석	민 형 배	박 성 중
서 동 용	윤 건 영	윤 후 덕	이수진(비)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5인)

찬성 의원(202인)

강 대 식	강 민 정	강 병 원	강 은 미
강 훈 식	고 민 정	고 용 진	구 자 근
권 성 동	권 인 숙	권 철 승	기 동 민
김 경 만	김 경 협	김 교 홍	김 남 국
김 도 읍	김 미 애	김 민 기	김 민 석
김 민 철	김 병 욱	김 병 주	김 상 희
김 선 교	김 성 주	김 성 환	김 수 홍
김 승 남	김 영 배	김 영 선	김 영 진

김 영 호	김 예 지	김 용 민	김 용 관
김 웅	김 윤 덕	김 정 호	김 종 민
김 주 영	김 진 표	김 철 민	김 학 용
김 한 규	김 한 정	김 형 동	김 홍 결
김 회 국	남 인 순	노 용 호	노 용 래
도 중 환	류 호 정	문 정 복	문 진 석
민 병 덕	민 홍 철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상 혁	박 성 준	박 성 중	박 수 영
박 영 순	박 완 주	박 용 진	박 재 호
박 정	박 정 하	박 찬 대	박 형 수
박 홍 근	배 진 교	백 종 현	백 해 련
서 동 용	서 범 수	서 삼 석	서 영 교
서 영 석	설 훈	소 병 철	소 병 훈
송 석 준	송 언 석	송 옥 주	송 재 호
신 영 대	신 원 식	신 정 훈	심 상 정
안 규 백	안 민 석	안 병 길	안 호 영
양 경 숙	양 금 회	양이원영	오 기 형
오 영 환	용 혜 인	우 상 호	위 성 곤
유 동 수	유 정 주	윤 건 영	윤 관 석
윤 미 향	윤 영 덕	윤 영 석	윤 재 갑
윤 재 옥	윤 주 경	윤 준 병	윤 호 중
윤 후 덕	이 개 호	이 동 주	이 만 희
이 명 수	이 상 현	이 성 만	이 소 영
이 수 진	이수진(비)	이 양 수	이 용
이 용 선	이 용 우	이 용 호	이 원 욱
이 원 택	이 은 주	이 인 선	이 인 영
이 장 섭	이 재 명	이 정 문	이 종 성
이 주 환	이 탄 희	이 태 규	이 학 영
이 현 승	이 형 석	인 재 근	임 병 현
임 오 경	임 이 자	임 호 선	장 동 혁
장 철 민	전 봉 민	전 용 기	전 재 수
전 주 혜	전 혜 숙	정 경 회	정 동 만
정 성 호	정 운 천	정 일 영	정 점 식
정 진 석	정 청 래	정 춘 숙	정 태 호
정 필 모	정 희 용	조 경 태	조 명 희
조 수 진	조 승 래	조 오 섭	주 철 현
진 선 미	진 성 준	최 강 욱	최 기 상
최 연 숙	최 영 희	최 재 형	최 종 윤
최 춘 식	최 형 두	최 해 영	한 기 호
한 무 경	한 병 도	한 정 애	한 준 호
허 영	허 은 아	허 종 식	홍 성 국
홍 영 표	홍 익 표	홍 정 민	황보승희
황 운 하	황 회		

기권 의원(3인)

강 득 구	민 형 배	이 해 식
-------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0인)

찬성 의원(193인)

강 대 식	강 득 구	강 민 정	강 병 원
강 은 미	강 훈 식	고 민 정	고 용 진
구 자 근	권 성 동	권 인 숙	권 칠 승
기 동 민	김 경 만	김 경 협	김 교 홍
김 남 국	김 도 읍	김 미 애	김 민 기
김 민 석	김 민 철	김 병 욱	김 병 주
김 상 훈	김 상 희	김 선 교	김 성 주
김 성 환	김 수 홍	김 승 남	김 영 배
김 영 선	김 영 진	김 영 호	김 예 지
김 용 민	김 용 판	김 윤 덕	김 정 호
김 종 민	김 주 영	김 진 표	김 철 민
김 학 용	김 한 규	김 한 정	김 홍 결
김 희 국	노 용 호	노 웅 래	류 호 정
문 정 복	문 진 석	민 병 덕	민 홍 철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상 혁	박 성 준
박 성 중	박 수 영	박 영 순	박 완 주
박 용 진	박 재 호	박 정	박 정 하
박 찬 대	박 형 수	박 홍 근	배 진 교
백 종 현	백 혜련	서 범 수	서 삼 석
서 영 교	서 영 석	설 훈	소 병 철
소 병 훈	송 석 준	송 언 석	송 옥 주
송 재 호	신 영 대	신 원 식	신 정 훈
신 현 영	심 상 정	안 규 백	안 민 석
안 병 길	안 호 영	양 경 숙	양 금 희
양이원영	오 기 형	오 영 환	용 혜 인
우 상 호	위 성 곤	유 동 수	유 정 주
윤 건 영	윤 관 석	윤 미 향	윤 영 석
윤 재 갑	윤 재 욱	윤 주 경	윤 준 병
윤 호 중	윤 후 덕	이 개 호	이 동 주
이 만 희	이 명 수	이 상 현	이 성 만
이 소 영	이수진(비)	이 양 수	이 용 선
이 용 우	이 용 호	이 원 욱	이 원 택
이 은 주	이 인 선	이 인 영	이 장 섭
이 재 명	이 정 문	이 종 성	이 주 환
이 탄 희	이 태 규	이 학 영	이 해 식
이 현 승	이 형 석	인 재 근	임 병 현
임 오 경	임 이 자	임 호 선	장 동 혁
장 철 민	전 봉 민	전 용 기	전 재 수
전 주 혜	전 혜 숙	정 경 희	정 동 만
정 성 호	정 윤 천	정 일 영	정 점 식
정 진 석	정 청 래	정 춘 숙	정 태 호
정 필 모	정 희 용	조 경 태	조 명 희

조 수 진	조 승 래	조 오 섭	주 철 현
진 선 미	진 성 준	최 강 욱	최 기 상
최 연 숙	최 영 희	최 재 형	최 종 윤
최 춘 식	한 기 호	한 병 도	한 정 애
허 영	허 종 식	홍 성 국	홍 영 표
홍 익 표	홍 정 민	황보승희	황 윤 하
황 희			

기권 의원(7인)

김 웅	남 인 순	민 형 배	서 동 용
윤 영 덕	이 용	허 은 아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0인)

찬성 의원(195인)

강 대 식	강 득 구	강 민 정	강 병 원
강 은 미	강 훈 식	고 민 정	고 용 진
구 자 근	권 성 동	권 인 숙	권 칠 승
기 동 민	김 경 만	김 경 협	김 교 홍
김 남 국	김 도 읍	김 민 기	김 민 석
김 민 철	김 병 욱	김 병 주	김 상 훈
김 상 희	김 성 주	김 성 환	김 수 홍
김 승 남	김 영 배	김 영 선	김 영 진
김 영 호	김 예 지	김 용 민	김 용 판
김 웅	김 윤 덕	김 정 호	김 종 민
김 주 영	김 진 표	김 철 민	김 학 용
김 한 규	김 한 정	김 홍 결	김 희 국
남 인 순	노 용 호	노 웅 래	도 종 환
류 호 정	문 정 복	문 진 석	민 병 덕
민 형 배	민 홍 철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상 혁	박 성 준	박 수 영	박 영 순
박 완 주	박 용 진	박 재 호	박 정
박 정 하	박 찬 대	박 홍 근	배 진 교
백 종 현	백 혜련	서 동 용	서 범 수
서 삼 석	서 영 교	서 영 석	설 훈
소 병 철	소 병 훈	송 석 준	송 옥 주
송 재 호	신 영 대	신 원 식	신 정 훈
신 현 영	심 상 정	안 규 백	안 민 석
안 병 길	안 호 영	양 경 숙	양 금 희
양이원영	오 기 형	오 영 환	용 혜 인
우 상 호	위 성 곤	유 동 수	유 정 주
윤 건 영	윤 관 석	윤 미 향	윤 영 덕
윤 재 갑	윤 재 욱	윤 주 경	윤 준 병
윤 호 중	윤 후 덕	이 개 호	이 동 주
이 만 희	이 명 수	이 상 현	이 성 만
이 소 영	이수진(비)	이 양 수	이 용

이 용 선	이 용 우	이 원 욱	이 원 택
이 은 주	이 인 선	이 인 영	이 장 섭
이 재 명	이 정 문	이 종 성	이 주 환
이 탄 희	이 태 규	이 학 영	이 해 식
이 현 승	이 형 석	인 재 근	임 병 헌
임 오 경	임 이 자	임 호 선	장 철 민
전 봉 민	전 용 기	전 재 수	전 주 혜
전 혜 숙	정 동 만	정 성 호	정 운 천
정 일 영	정 점 식	정 진 석	정 청 래
정 춘 숙	정 태 호	정 필 모	정 희 용
조 경 태	조 명 희	조 수 진	조 승 래
조 오 섭	주 철 현	진 선 미	진 성 준
최 강 욱	최 기 상	최 연 숙	최 영 희
최 재 형	최 종 윤	최 춘 식	최 형 두
최 혜 영	한 무 경	한 병 도	한 정 애
한 준 호	허 영	허 은 아	허 종 식
홍 성 국	홍 영 표	홍 익 표	홍 정 민
황보승희	황 운 하	황 희	

반대 의원(2인)

김 형 동 정 경 희

기권 의원(3인)

김 미 애 박 성 중 장 동 혁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0인)

찬성 의원(195인)

강 대 식	강 득 구	강 민 정	강 병 원
강 은 미	강 훈 식	고 민 정	고 용 진
구 자 근	권 성 동	권 인 숙	권 철 승
기 동 민	김 경 만	김 경 협	김 교 홍
김 남 국	김 도 읍	김 미 애	김 민 기
김 민 석	김 민 철	김 병 욱	김 병 주
김 상 훈	김 상 희	김 성 주	김 성 환
김 수 홍	김 승 남	김 영 배	김 영 선
김 영 진	김 영 호	김 예 지	김 용 민
김 용 판	김 웅	김 윤 덕	김 정 재
김 정 호	김 주 영	김 진 표	김 철 민
김 학 용	김 한 규	김 한 정	김 홍 결
김 희 국	남 인 순	노 용 호	노 용 래
도 중 환	류 호 정	문 정 복	문 진 석
민 병 덕	민 형 배	민 홍 철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상 혁	박 성 준	박 수 영
박 영 순	박 완 주	박 용 진	박 재 호
박 정	박 정 하	박 찬 대	박 홍 근
배 진 교	백 종 현	백 혜 련	서 동 용

서 범 수	서 삼 석	서 영 교	서 영 석
설 훈	소 병 철	소 병 훈	송 석 준
송 옥 주	송 재 호	신 영 대	신 원 식
신 정 훈	신 현 영	심 상 정	안 규 백
안 민 석	안 병 길	안 호 영	양 경 숙
양 금 희	양이원영	오 기 형	오 영 환
용 혜 인	우 상 호	위 성 곤	유 동 수
유 정 주	윤 건 영	윤 관 석	윤 미 향
윤 영 덕	윤 영 석	윤 재 갑	윤 재 욱
윤 준 병	윤 호 중	윤 후 덕	이 개 호
이 동 주	이 만 희	이 명 수	이 상 현
이 성 만	이 소 영	이수진(비)	이 양 수
이 용	이 용 선	이 용 우	이 원 욱
이 원 택	이 은 주	이 인 선	이 인 영
이 장 섭	이 재 명	이 정 문	이 종 성
이 주 환	이 탄 희	이 태 규	이 학 영
이 해 식	이 현 승	이 형 석	인 재 근
임 병 헌	임 오 경	임 이 자	임 호 선
장 철 민	전 봉 민	전 용 기	전 재 수
전 주 혜	전 혜 숙	정 동 만	정 성 호
정 운 천	정 일 영	정 점 식	정 진 석
정 청 래	정 춘 숙	정 태 호	정 필 모
조 경 태	조 수 진	조 승 래	조 오 섭
주 철 현	진 선 미	진 성 준	최 강 욱
최 기 상	최 연 숙	최 영 희	최 재 형
최 종 윤	최 춘 식	최 형 두	최 혜 영
한 기 호	한 무 경	한 병 도	한 정 애
한 준 호	허 영	허 은 아	허 종 식
홍 성 국	홍 영 표	홍 익 표	홍 정 민
황보승희	황 운 하	황 희	

반대 의원(2인)

김 형 동 정 경 희

기권 의원(3인)

박 성 중 장 동 혁 조 명 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2인)

찬성 의원(201인)

강 대 식	강 득 구	강 민 정	강 병 원
강 은 미	강 훈 식	고 민 정	고 용 진
구 자 근	권 성 동	권 인 숙	권 철 승
기 동 민	김 경 만	김 경 협	김 교 홍
김 남 국	김 도 읍	김 미 애	김 민 기
김 민 석	김 민 철	김 병 욱	김 병 주

김 상 훈	김 상 희	김 성 주	김 성 환
김 수 흥	김 승 남	김 영 배	김 영 선
김 영 진	김 영 호	김 예 지	김 용 민
김 용 판	김 웅	김 윤 덕	김 정 재
김 정 호	김 주 영	김 진 표	김 철 민
김 학 용	김 한 규	김 한 정	김 형 동
김 흥 결	김 희 국	남 인 순	노 용 호
노 웅 래	도 종 환	류 호 정	문 정 복
민 병 덕	민 형 배	민 흥 철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상 혁	박 성 준	박 성 중
박 수 영	박 영 순	박 완 주	박 용 진
박 재 호	박 정	박 정 하	박 찬 대
박 형 수	박 흥 근	배 진 교	백 종 현
백 혜 련	서 동 용	서 범 수	서 삼 석
서 영 교	서 영 석	서 정 숙	설 훈
소 병 철	소 병 훈	송 석 준	송 언 석
송 옥 주	송 재 호	신 영 대	신 원 식
신 정 훈	신 현 영	심 상 정	안 규 백
안 민 석	안 병 길	안 호 영	양 경 숙
양 금 회	양이원영	오 기 형	오 영 환
용 혜 인	우 상 호	위 성 곤	유 동 수
유 정 주	윤 건 영	윤 관 석	윤 미 향
윤 영 덕	윤 영 석	윤 재 갑	윤 재 옥
윤 준 병	윤 호 중	윤 후 덕	이 개 호
이 동 주	이 만 회	이 명 수	이 상 현
이 성 만	이 소 영	이 양 수	이 용
이 용 선	이 용 우	이 원 욱	이 원 택
이 은 주	이 인 선	이 인 영	이 장 섭
이 재 명	이 정 문	이 종 성	이 주 환
이 탄 회	이 태 규	이 학 영	이 해 식
이 현 승	이 형 석	인 재 근	임 병 현
임 오 경	임 이 자	임 호 선	장 동 혁
장 철 민	전 봉 민	전 용 기	전 재 수
전 주 혜	전 혜 숙	정 경 회	정 동 만
정 성 호	정 운 천	정 일 영	정 점 식
정 청 래	정 춘 숙	정 태 호	정 필 모
정 희 용	조 경 태	조 명 회	조 수 진
조 승 래	조 오 섭	주 철 현	진 선 미
진 성 준	최 강 욱	최 기 상	최 연 숙
최 영 회	최 재 형	최 중 윤	최 춘 식
최 형 두	최 혜 영	한 기 호	한 무 경
한 병 도	한 정 애	한 준 호	허 영
허 은 아	허 중 식	홍 성 국	홍 영 표
홍 익 표	홍 정 민	황보승희	황 운 하

기권 의원(1인)

이수진(비)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1인)

찬성 의원(189인)

강 득 구	강 민 정	강 병 원	강 은 미
강 훈 식	고 민 정	고 용 진	구 자 근
권 성 동	권 인 숙	권 칠 승	기 동 민
김 경 만	김 경 협	김 교 홍	김 남 국
김 도 읍	김 미 애	김 민 기	김 민 석
김 민 철	김 병 욱	김 병 주	김 상 훈
김 상 희	김 성 주	김 성 환	김 수 흥
김 승 남	김 영 배	김 영 선	김 영 진
김 영 호	김 예 지	김 용 민	김 용 판
김 윤 덕	김 정 재	김 정 호	김 주 영
김 진 표	김 철 민	김 학 용	김 한 규
김 한 정	김 형 동	김 흥 결	김 희 국
남 인 순	노 웅 래	도 종 환	류 호 정
문 정 복	문 진 석	민 병 덕	민 형 배
민 흥 철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상 혁
박 성 준	박 영 순	박 완 주	박 용 진
박 재 호	박 정	박 정 하	박 찬 대
박 형 수	박 흥 근	배 진 교	백 종 현
백 혜 련	서 동 용	서 범 수	서 삼 석
서 영 교	서 영 석	설 훈	소 병 철
소 병 훈	송 석 준	송 언 석	송 옥 주
신 현 영	심 상 정	안 규 백	신 정 훈
안 호 영	양 경 숙	양 금 회	양이원영
오 기 형	오 영 환	용 혜 인	우 상 호
위 성 곤	유 동 수	유 정 주	윤 건 영
윤 관 석	윤 미 향	윤 영 덕	윤 영 석
윤 재 갑	윤 재 옥	윤 준 병	윤 호 중
윤 후 덕	이 개 호	이 동 주	이 만 회
이 명 수	이 상 현	이 성 만	이 소 영
이수진(비)	이 양 수	이 용	이 용 선
이 용 우	이 원 욱	이 원 택	이 은 주
이 인 선	이 인 영	이 장 섭	이 재 명
이 정 문	이 종 성	이 주 환	이 탄 회
이 태 규	이 학 영	이 해 식	이 현 승
이 형 석	인 재 근	임 병 현	임 오 경
임 이 자	임 호 선	장 동 혁	장 철 민
전 봉 민	전 용 기	전 재 수	전 혜 숙

정 동 만	정 성 호	정 운 천	정 일 영
정 점 식	정 청 래	정 태 호	정 필 모
정 희 용	조 경 태	조 승 래	조 오 섭
주 철 현	진 선 미	진 성 준	최 강 욱
최 연 숙	최 영 희	최 종 윤	최 춘 식
최 형 두	최 혜 영	한 기 호	한 무 경
한 병 도	한 정 애	한 준 호	허 영
허 은 아	허 종 식	홍 성 국	홍 영 표
홍 익 표	홍 정 민	황보승희	황 운 하
황 희			

반대 의원(1인)

조 수 진

기권 의원(11인)

강 대 식	김 웅	노 용 호	박 성 중
박 수 영	안 병 길	윤 주 경	전 주 혜
정 경 희	조 명 희	최 재 형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3인)

찬성 의원(202인)

강 대 식	강 득 구	강 민 정	강 병 원
강 은 미	강 훈 식	고 민 정	고 용 진
구 자 근	권 성 동	권 인 숙	권 칠 승
기 동 민	김 경 만	김 경 협	김 교 홍
김 남 국	김 도 읍	김 미 애	김 민 기
김 민 석	김 민 철	김 병 욱	김 병 주
김 상 훈	김 상 희	김 성 주	김 성 환
김 수 홍	김 승 남	김 영 배	김 영 선
김 영 진	김 영 호	김 예 지	김 용 민
김 용 판	김 웅	김 윤 덕	김 정 재
김 정 호	김 주 영	김 진 표	김 철 민
김 학 용	김 한 규	김 한 정	김 형 동
김 홍 결	김 희 국	남 인 순	노 용 호
노 웅 래	도 종 환	류 호 정	문 정 복
문 진 석	민 병 덕	민 형 배	민 홍 철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상 혁	박 성 준
박 성 중	박 수 영	박 영 순	박 완 주
박 용 진	박 재 호	박 정	박 정 하
박 찬 대	박 형 수	박 홍 근	배 진 교
백 종 현	백 혜 련	서 동 용	서 범 수
서 삼 석	서 영 교	서 영 석	서 정 숙
설 훈	소 병 철	소 병 훈	송 석 준
송 언 석	송 옥 주	송 재 호	신 영 대
신 원 석	신 정 훈	심 상 정	안 규 백
안 민 석	안 병 길	안 호 영	양 경 숙

양 금 희	양이원영	오 기 형	오 영 환
용 혜 인	우 상 호	위 성 곤	유 동 수
유 정 주	윤 건 영	윤 관 석	윤 미 향
윤 영 덕	윤 영 석	윤 재 갑	윤 재 욱
윤 주 경	윤 준 병	윤 호 중	윤 후 덕
이 개 호	이 동 주	이 만 희	이 명 수
이 상 현	이 성 만	이 소 영	이수진(비)
이 양 수	이 용	이 용 선	이 용 우
이 원 욱	이 원 택	이 은 주	이 인 선
이 인 영	이 장 섭	이 재 명	이 정 문
이 종 성	이 주 환	이 탄 희	이 태 규
이 학 영	이 해 식	이 현 승	이 형 석
인 재 근	임 병 현	임 오 경	임 이 자
임 호 선	장 동 혁	장 철 민	전 봉 민
전 용 기	전 재 수	전 주 혜	전 혜 숙
정 경 희	정 동 만	정 성 호	정 운 천
정 일 영	정 점 식	정 청 래	정 춘 숙
정 태 호	정 필 모	정 희 용	조 경 태
조 명 희	조 수 진	조 승 래	조 오 섭
주 철 현	진 선 미	진 성 준	최 강 욱
최 기 상	최 승 재	최 연 숙	최 영 희
최 종 윤	최 춘 식	최 형 두	최 혜 영
한 기 호	한 무 경	한 병 도	한 정 애
한 준 호	허 영	허 은 아	허 종 식
홍 영 표	홍 익 표	홍 정 민	황보승희
황 운 하	황 희		

기권 의원(1인)

최 재 형

○출석 의원(267인)

강 기 윤	강 대 식	강 득 구	강 민 국
강 민 정	강 병 원	강 선 우	강 은 미
강 훈 식	고 민 정	고 용 진	구 자 근
권 명 호	권 성 동	권 은 희	권 인 숙
권 칠 승	기 동 민	김 경 만	김 경 협
김 교 홍	김 기 현	김 남 국	김 도 읍
김 두 관	김 미 애	김 민 기	김 민 석
김 민 철	김 병 기	김 병 욱	金 炳 旭
김 병 주	김 상 훈	김 상 희	김 석 기
김 선 교	김 성 원	김 성 주	김 성 환
김 수 홍	김 승 남	김 승 수	김 승 원
김 영 배	김 영 선	김 영 식	김 영 진
김 영 호	김 예 지	김 용 민	김 용 판
김 웅	김 원 이	김 윤 덕	김 의 겸
김 정 재	김 정 호	김 종 민	김 주 영

김진표	김철민	김태호	김학용
김한규	김한정	김형동	김홍걸
김희재	김희곤	김희국	남인순
노용호	노웅래	도종환	류호정
맹성규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광온	박대수
박덕흠	박범계	박병석	박상혁
박성민	박성준	박성중	박수영
박영순	박완주	박용진	박재호
박정	박정하	박주민	박찬대
박형수	박홍근	배진교	배현진
백종헌	백혜련	변재일	서동용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일준	서정숙	설훈	성일종
소병철	소병훈	송갑석	송기헌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호
신영대	신원식	신정훈	신현영
심상정	안규백	안민석	안병길
안철수	안호영	양경숙	양금희
양이원영	엄태영	오기형	오영환
용혜인	우상호	우원식	위성곤
유경준	유기홍	유동수	유상범
유의동	유정주	윤건영	윤관석
윤미향	윤영덕	윤영석	윤영찬
윤재갑	윤재옥	윤주경	윤준병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달곤	이동주	이만희	이명수
이병훈	이상민	이상헌	이성만
이소영	이수진	이수진(비)	이양수
이용	이용빈	이용선	이용우
이용호	이원욱	이원택	이은주
이인선	이인영	이장섭	이재명
이정문	이종성	이주환	이채익
이탄희	이태규	이학영	이해식
이헌승	이형석	인재근	임병헌
임오경	임이자	임종성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제원	장철민
전봉민	전용기	전재수	전주혜
전혜숙	정경희	정동만	정성호
정우택	정운천	정일영	정점식
정진석	정청래	정춘숙	정태호
정필모	정희용	조경태	조명희
조수진	조승래	조오섭	조은희
조웅천	조정식	조해진	주철현
주호영	지성호	진선미	진성준

천준호	최강욱	최기상	최승재
최연숙	최영희	최재형	최종윤
최춘식	최형두	최혜영	한기호
한무경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영	허은아	허종식	홍석준
홍성국	홍영표	홍익표	홍정민
황보승희	황운하	황희	

○개의 시 재석 의원(203인)

강기윤	강대식	강민국	강민정
강병원	강선우	강은미	강훈식
고민정	고용진	구자근	권명호
권성동	권인숙	권철승	기동민
김경만	김교홍	김남국	김도읍
김두관	김미애	김민석	김민철
김병기	金炳旭	김상훈	김상희
김성주	김성환	김수홍	김승남
김승원	김영배	김영선	김영진
김영호	김예지	김용민	김용관
김웅	김원이	김윤덕	김의겸
김정호	김주영	김진표	김철민
김태호	김학용	김한규	김한정
김홍걸	김희재	김희곤	남인순
노용호	노웅래	도종환	류호정
맹성규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병석	박상혁
박성준	박수영	박영순	박재호
박정	박정하	박찬대	박홍근
배진교	백종헌	백혜련	서동용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일준	서정숙	설훈	성일종
소병철	소병훈	송갑석	송기헌
송언석	송옥주	송재호	신영대
신정훈	안규백	안민석	안철수
안호영	양경숙	양이원영	오기형
오영환	위성곤	유경준	유기홍
유동수	유의동	유정주	윤건영
윤관석	윤미향	윤영덕	윤영석
윤영찬	윤재갑	윤주경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동주
이만희	이명수	이병훈	이상민
이상헌	이성만	이소영	이수진(비)
이용	이용빈	이용선	이용호
이원욱	이원택	이은주	이인선
이인영	이장섭	이정문	이종성
이탄희	이태규	이학영	이해식

이 헌 승	이 형 석	인 재 근	임 병 현
임 이 자	임 종 성	임 호 선	장 경 태
장 동 혁	장 철 민	전 용 기	전 재 수
전 혜 숙	정 경 희	정 동 만	정 우 택
정 일 영	정 진 석	정 청 래	정 춘 숙
정 태 호	정 필 모	정 희 용	조 명 희
조 승 래	조 오 섭	조 정 식	조 해 진
주 철 현	주 호 영	지 성 호	진 선 미
진 성 준	천 준 호	최 강 욱	최 기 상
최 승 재	최 연 숙	최 영 희	최 재 형
최 종 윤	최 춘 식	최 혜 영	한 무 경
한 병 도	한 정 애	한 준 호	허 종 식
홍 성 국	홍 영 표	홍 익 표	홍 정 민
황보승희	황 운 하	황 희	

○산회 시 재석 의원(38인)

강 대 식	강 민 정	강 은 미	김 민 기
김 상 훈	김 석 기	김 영 식	김 영 진
김 영 호	김 용 판	김 진 표	류 호 정
민 병 덕	민 홍 철	박 광 온	박 형 수
박 홍 근	배 진 교	서 정 숙	송 언 석
신 현 영	심 상 정	엄 태 영	위 성 곤
윤 주 경	이 은 주	이 종 성	이 주 환
이 학 영	전 용 기	정 동 만	정 필 모
조 명 희	조 승 래	진 성 준	최 승 재
최 연 숙	최 춘 식		

○출장 의원(18인)

강 준 현	김 영 주	류 성 결	박 대 출
배 준 영	신 동 근	양 기 대	양 정 숙
양 향 자	어 기 구	윤 두 현	윤 창 현
이 종 배	이 철 규	장 혜 영	전 해 철
최 인 호	홍 기 원		

○청가 의원(8인)

고 영 인	김 태 년	박 진	윤 상 현
이 재 정	조 정 훈	하 영 제	하 태 경

○국회 참석자

사 무 총 장	이 광 재
의 사 국 장	정 명 호

○출석 국무위원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이 상 민
해 양 수 산 부 장 관	조 승 환

○출석 정부위원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장 관 직 무 대 리)	장 영 진
국토교통부제2차관 (장 관 직 무 대 리)	어 명 소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장 관 직 무 대 리)

조 주 현

【보고사항】

○특별위원장 선임

위원회	위원장	교섭단체	연월일
연 금 개 혁	주호영	국민의힘	2022. 10. 25.

○간사 선임

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연 금 개 혁 특 별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2022. 10. 25.
	강기윤	국민의힘	

○상임위원 개선

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국회운영	윤두현	정희용	국민의힘	2022. 10. 26.

○의안 제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2022. 10. 25. 서영교·김남국·김민철·김홍걸·양기대·유정주·이용빈·이원욱·임오경·전혜숙 의원 발의)

국회에서 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권철승 의원 대표발의)

(2022. 10. 25. 권철승·강득구·고영인·고용진·김철민·김태년·도종환·민병덕·박성준·임호선 의원 발의)

이상 2건 10월 26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2022. 10. 25. 박주민·권인숙·김용민·김의겸·류호정·서영교·양경숙·윤미향·이동주·이재정·정춘숙·정태호 의원 발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

(2022. 10. 25. 서범수·강기윤·권명호·김선교·김영식·김용판·윤영석·이달곤·이채익·최승재 의원 발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2022. 10. 25. 장혜영·강은미·류호정·배진교·심상정·이은주·권인숙·김예지·이수진(비)·황운하 의원 발의)

이상 3건 10월 26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

(2022. 10. 25. 윤창현·구자근·김영식·노용호·배준영·유경준·윤한홍·전주혜·정찬민·

홍석준 의원 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 의원 대표발의)

(2022. 10. 25. 안철수 · 조수진 · 김영선 · 홍석준 · 박덕흠 · 김학용 · 이명수 · 김태호 · 김석기 · 하태경 · 태영호 · 김예지 의원 발의)

이상 2건 10월 26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

(2022. 10. 25. 정운천 · 이채익 · 홍문표 · 윤재갑 · 조경태 · 박성중 · 김태호 · 이인선 · 엄태영 · 윤한홍 의원 발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

(2022. 10. 25. 신동근 · 양정숙 · 강민정 · 홍성국 · 김주영 · 김영진 · 정태호 · 이수진 · 강준현 · 고용진 · 조승래 · 양기대 · 홍영표 · 한병도 의원 발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

(2022. 10. 25. 신동근 · 이상현 · 고용진 · 김태년 · 한병도 · 양정숙 · 강준현 · 홍성국 · 홍영표 · 김주영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2022. 10. 25. 안호영 · 김승남 · 김홍걸 · 소병훈 · 신정훈 · 양정숙 · 위성곤 · 윤미향 · 윤재갑 · 윤준병 · 정춘숙 · 주철현 · 한병도 의원 발의)

이상 4건 10월 26일 기획재정부위원회에 회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 의원 대표발의)

(2022. 10. 25. 김경협 · 김영진 · 김주영 · 김태년 · 김홍걸 · 송갑석 · 윤후덕 · 조승래 · 조오섭 · 최인호 의원 발의)

10월 26일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2022. 10. 25. 안호영 · 김승남 · 김홍걸 · 소병훈 · 신정훈 · 양정숙 · 위성곤 · 윤미향 · 윤재갑 · 윤준병 · 정춘숙 · 주철현 · 한병도 의원 발의)

10월 26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2022. 10. 25. 윤준병 · 김홍걸 · 오영환 · 한병도 · 안규백 · 이용선 · 김태년 · 고영인 · 신정훈 · 양정숙 의원 발의)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2022. 10. 25. 윤준병 · 신정훈 · 오영환 · 양정숙 · 한병도 · 이상현 · 소병훈 · 김교홍 · 안규백 · 이용선 의원 발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2022. 10. 25. 윤준병 · 양정숙 · 장철민 · 김홍걸 · 오영환 · 한병도 · 이상현 · 안호영 · 김성주 · 소병훈 · 서영교 · 김교홍 · 안규백 · 이용선 의원 발의)

수산업 · 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2022. 10. 25. 윤준병 · 장철민 · 김홍걸 · 오영환 · 한병도 · 이상현 · 안호영 · 김성주 · 소병훈 · 서영교 · 김교홍 · 안규백 · 이용선 의원 발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2022. 10. 25. 윤준병 · 김홍걸 · 양정숙 · 장철민 · 오영환 · 한병도 · 이상현 · 소병훈 · 서영교 · 김교홍 · 안규백 · 이용선 의원 발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2022. 10. 25. 안호영 · 김승남 · 김홍걸 · 소병훈 · 신정훈 · 양정숙 · 위성곤 · 윤미향 · 윤재갑 · 윤준병 · 정춘숙 · 주철현 · 한병도 의원 발의)

이상 6건 10월 26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회에 회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2022. 10. 25. 민홍철 · 김희재 · 강민정 · 박상혁 · 허영 · 김정호 · 임호선 · 김두관 · 한정애 · 전재수 · 이학영 의원 발의)

은둔형 외톨이 지원법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

(2022. 10. 25. 김홍걸 · 김성주 · 김승남 · 민병덕 · 민형배 · 설훈 · 양정숙 · 양정숙 · 양향자 · 오영환 · 윤준병 · 이원욱 · 이정문 · 조오섭 · 최혜영 · 한병도 의원 발의)

이상 2건 10월 26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

(2022. 10. 25. 신동근 · 김민철 · 김수홍 · 김의겸 · 김주영 · 류호정 · 서영석 · 양정숙 · 양정숙 · 유정주 · 이병훈 · 장철민 · 조승래 · 홍영표 의원 발의)

10월 26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 발의)

(2021. 10. 25. 신동근 · 강병원 · 강준현 · 고용진 · 김정호 · 문진석 · 박상혁 · 유정주 · 이수진(비) · 이용빈 · 전용기 · 한병도 의원 발의)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2021. 10. 25. 민홍철 · 김두관 · 이학영 · 임호선 · 박상혁 · 김병욱 · 장철민 · 강민정 · 허영 · 김정호 · 한정애 · 전재수 · 김희재 의원 발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

(2022. 10. 25. 하태경 · 金炳旭 · 최승재 · 백종현 · 도종환 · 김영주 · 태영호 · 김태호 · 안철수 · 정진석 · 황희 의원 발의)

해외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 발의)

(2022. 10. 25. 강대식 · 김정재 · 서일준 · 박정하 · 정동만 · 이채익 · 김용관 · 김상훈 · 류성걸 · 정우택 의원 발의)

이상 4건 10월 26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철승 의원 대표 발의)

(2022. 10. 26. 권철승 · 강병원 · 고용진 · 신영대 · 이장섭 · 이형석 · 임호선 · 전용기 · 전재수 · 정춘숙 · 조승래 의원 발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2022. 10. 26. 민홍철 · 강민정 · 김두관 · 김정호 · 김희재 · 박상혁 · 이학영 · 장철민 · 전재수 · 한정애 의원 발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 발의)

(2022. 10. 26. 김민석 · 강득구 · 강선우 · 고영인 · 김성주 · 김수홍 · 문진석 · 박정 · 신동근 · 양정숙 · 이은주 · 정춘숙 · 조웅천 · 최종윤 · 최혜영 · 홍정민 의원 발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관 의원 대표발의)

(2022. 10. 26. 김용관 · 김영식 · 하영제 · 김학용 · 박덕흠 · 박대수 · 권명호 · 이채익 · 박성민 · 강대식 · 김선교 · 이주환 · 전봉민 · 김성원 의원 발의)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

(2022. 10. 26. 홍석준 · 강대식 · 강기윤 · 윤창현 · 김태호 · 김예지 · 김용관 · 임병헌 · 지성호 · 엄태영 · 김선교 의원 발의)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관 의원 대표발의)

(2022. 10. 26. 김용관 · 김영식 · 하영제 · 김학용 · 박덕흠 · 권명호 · 이채익 · 박성민 · 강대식 · 이주환 · 김성원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2022. 10. 26. 안호영 · 김승남 · 김홍걸 · 소병훈 · 신정훈 · 양정숙 · 위성곤 · 윤미향 · 윤재갑 · 윤준병 · 정춘숙 · 주철현 · 한병도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권철승 의원 대표발의)

(2022. 10. 26. 권철승 · 강득구 · 고영인 · 고용진 · 김민철 · 김종민 · 김철민 · 도종환 · 박성준 · 홍익표 의원 발의)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

(2022. 10. 26. 이채익 · 홍문표 · 김석기 · 황보승희 · 윤상현 · 윤영석 · 김영선 · 김미애 · 김선교 · 윤주경 의원 발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

(2022. 10. 26. 서범수 · 강기윤 · 권명호 · 김선교 · 김영식 · 김용관 · 윤영석 · 이달곤 · 이채익 · 최승재 의원 발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2022. 10. 26. 최혜영 · 정춘숙 · 김정호 · 김원이 · 김민석 · 양향자 · 김홍걸 · 이학영 · 박찬대 · 정태호 · 강민정 · 송재호 · 윤미향 · 양경숙 · 윤영덕 · 홍영표 · 양이원영 · 인제근 의원 발의)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

(2022. 10. 26. 여기구 · 김주영 · 김홍걸 · 박상혁 · 박정 · 송갑석 · 신정훈 · 안호영 · 윤재갑 · 윤준병 · 최종윤 의원 발의)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

(2022. 10. 26. 여기구 · 김주영 · 김홍걸 · 박상혁 · 박정 · 송갑석 · 신정훈 · 안호영 · 윤재갑 · 윤준병 의원 발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

(2022. 10. 26. 여기구 · 송갑석 · 박상혁 · 박정 · 김주영 · 안호영 · 신정훈 · 김홍걸 · 윤재갑 · 윤준병 의원 발의)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 발의)

(2022. 10. 26. 이수진(비) · 강민정 · 김병욱 · 김영진 · 김정호 · 김태년 · 노웅래 · 민병덕 · 송옥주 · 이학영 · 정성호 · 진성준 의원 발의)

방위사업계약 체결 및 이행 등에 관한 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

(2022. 10. 26. 이헌승 · 강대식 · 강민국 · 구자근 · 김기현 · 김병주 · 김영식 · 김학용 · 김형동 · 민홍철 · 박성민 · 배진교 · 백종현 · 서병수 · 성일종 · 신원식 · 안규백 · 윤주경 · 윤창현 · 윤후덕 · 이양수 · 이주환 · 이채익 · 임병헌 · 전봉민 · 정동만 · 정성호 · 조은희 · 한기호 의원 발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

(2022. 10. 26. 전주혜 · 권성동 · 김도읍 · 김상훈 · 김영선 · 안철수 · 윤주경 · 윤창현 · 이채익 · 이태규 · 지성호 · 최재형 · 최형두 · 태영호 의원 발의)

이상 17건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202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2. 10. 26.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6건 2022. 10. 26. 행정안전위원장 제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3건 2022. 10. 26.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3건 2022. 10. 26. 국토교통위원장 제출)

위문금 각출의 건

(2022. 10. 27. 의장 제의)

○의안 심사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 발의)

(2021. 4. 2. 전주혜 · 김도읍 · 조수진 · 허은아 · 유상범 · 윤창현 · 김예지 · 유의동 · 추경호 · 이채익 · 김승수 의원 발의)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 7. 16. 정부 제출)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 발의)

(2021. 5. 12. 민병덕 · 맹성규 · 송재호 · 윤준병 · 이규민 · 이동주 · 이수진(비) · 이용빈 · 이용선 · 장경태 · 정찬민 · 조오섭 · 천준호 · 최종윤 · 허영 · 홍성국 의원 발의)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

(2021. 3. 19. 김영배 · 진선미 · 양기대 · 이병훈 · 기동민 · 양정숙 · 이동주 · 오영환 · 황운하 · 이해식 의원 발의)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

(2021. 11. 8. 서병수 · 구자근 · 이영 · 이태규 · 최춘식 · 추경호 · 김상훈 · 이명수 · 이종성 · 김용판 · 김형동 의원 발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2021. 8. 12. 백혜련 · 김상희 · 송재호 · 오영환 · 용혜인 · 이성만 · 임호선 · 최기상 · 최종윤 · 홍성국 의원 발의)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

(2021. 5. 10. 이주환 · 金炳旭 · 김용판 · 김태호 · 백종현 · 서병수 · 서일준 · 윤창현 · 정진석 · 정찬민 · 지성호 · 태영호 · 한무경 의원 발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 12. 28. 정부 제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

(2022. 2. 14. 강준현 · 고영인 · 김병주 · 김희재 · 문정복 · 송옥주 · 이장섭 · 임종성 · 임호선 · 홍성국 의원 발의)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

(2021. 3. 8. 황운하 · 양정숙 · 김승원 · 민형배 · 최강욱 · 강민정 · 김희재 · 김영호 · 김홍걸 · 오영환 의원 발의)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 10. 15. 정부 제출)

(이상 9건 수정하여 의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

(2021. 8. 2. 김병기 · 박정 · 안민석 · 오영환 · 문진석 · 박성준 · 기동민 · 김영주 · 이수진 · 전용기 · 윤준병 · 서영교 · 이정문 의원 발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

(2022. 1. 21. 이성만 · 송옥주 · 정일영 · 유동수 · 신동근 · 홍영표 · 윤관석 · 허종식 · 오영환 · 김교홍 · 박찬대 · 이동주 · 송영길 · 맹성규 의원 발의)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

(2021. 7. 7. 정점식 · 박덕흠 · 성일종 · 이용 · 김용환 · 조수진 · 박대출 · 유경준 · 임이자 · 지성호 의원 발의)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

(2022. 1. 28. 정점식 · 강대식 · 구자근 · 권명호 · 김석기 · 김희곤 · 송언석 · 양금희 · 유경준 · 전봉민 · 황보승희 의원 발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0. 12. 11. 정부 제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9. 서일준 · 김용환 · 지성호 · 정운천 · 김태흠 · 서병수 · 양금희 · 金炳旭 · 하영제 · 김영식 · 김형동 · 김정재 · 한무경 · 김기현 · 허은아 의원 발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 3. 16. 정부 제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

(2022. 4. 12. 전용기 · 이병훈 · 장철민 · 박광온 · 전재수 · 김영배 · 김두관 · 윤준병 · 김병기 · 오영환 의원 발의)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2021. 6. 21. 어기구 · 김민철 · 김정호 · 김진표 · 윤건영 · 이수진(비) · 이수진 · 이용우 · 주철현 · 허종식 의원 발의)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 8. 26. 정부 제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 8. 5. 정부 제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

(2022. 4. 8. 이종성 · 이종배 · 박대수 · 정운천 · 김승수 · 김상훈 · 성일종 · 정우택 · 정진석 · 구자근 의원 발의)

(이상 12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23건 행정안전위원장 보고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

(2021. 4. 28. 주철현 · 양정숙 · 조오섭 · 이해식 · 박찬대 · 신정훈 · 김승남 · 위성곤 · 윤영덕 · 양향자 · 서삼석 · 최종윤 · 소병훈 · 이병훈 · 송갑석 · 우원식 · 김원이 · 민형배 · 어기구 · 이용빈 · 이개호 · 김영진 · 이낙연 의원 발의)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

(2021. 4. 28. 주철현 · 양정숙 · 최종윤 · 조오섭 · 이해식 · 박찬대 · 신정훈 · 김승남 · 위성곤 · 윤영덕 · 양향자 · 서삼석 · 소병훈 · 이병훈 · 송갑석 · 우원식 · 김원이 · 민형배 · 어기구 · 이용빈 · 이개호 · 김영진 · 이낙연 의원 발의)

(이상 2건 수정하여 의결)

이상 2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보고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

(2021. 6. 23. 권명호 · 유상범 · 엄태영 · 김도읍 · 송언석 · 이만희 · 최춘식 · 최형두 · 강기윤 · 구자근 의원 발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

(2021. 6. 3. 최형두 · 강기윤 · 권명호 · 김성원 · 김영식 · 박성민 · 엄태영 · 이종성 · 정운천 · 태영호 의원 발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

(2022. 1. 24. 양이원영 · 김승원 · 김용민 · 김정호 · 도종환 · 윤영덕 · 이성만 · 이수진 · 정일영 · 진성준 · 최강욱 의원 발의)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0. 7. 14. 정부 제출)

청년 지원을 위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021. 12. 17. 정부 제출)

(이상 5건 원안대로 의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2022. 4. 18. 이개호 · 김병기 · 김주영 · 서삼석 ·

최기상 · 오영환 · 위성곤 · 윤재갑 · 이병훈 ·
홍성국 의원 발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

(2021. 5. 10. 신영대 · 양정숙 · 김윤덕 · 신정훈 ·
김교홍 · 김정호 · 서삼석 · 이원택 · 이규민 ·
이학영 · 이동주 의원 발의)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 발의)

(2020. 11. 30. 신영대 · 김윤덕 · 한병도 · 김승원 ·
민형배 · 이병훈 · 송갑석 · 이장섭 · 유정주 ·
김정호 의원 발의)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

(2021. 11. 8. 정태호 · 김교홍 · 김정호 · 홍익표 ·
임호선 · 김경만 · 홍기원 · 김영배 · 강선우 ·
홍성국 의원 발의)

(이상 4건 수정하여 의결)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

(2020. 6. 25. 윤한홍 · 한무경 · 강대식 · 이명수 ·
홍준표 · 박상도 · 태영호 · 김영식 · 이만희 ·
권성동 · 강기윤 · 추경호 · 김기현 의원 발의)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 7. 14. 정부 제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김경만 · 위성곤 · 신정훈 · 문진석 ·
이용선 · 김병주 · 윤미향 · 김주영 · 이수진 ·
정태호 의원 발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

(2021. 8. 10. 한무경 · 양금희 · 태영호 · 정희용 ·
권명호 · 이용 · 하영제 · 김정재 · 서일준 ·
김영식 의원 발의)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

(2020. 9. 17. 우원식 · 양이원영 · 이해식 · 남인순 ·
오영환 · 인재근 · 윤건영 · 김승원 · 양정숙 ·
윤미향 · 김민석 · 송재호 의원 발의)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

(2021. 11. 23. 이주환 · 김용관 · 권명호 · 박대수 ·
백종현 · 조경태 · 김성원 · 조명희 · 하영제 ·
태영호 의원 발의)

(이상 6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15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보고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2022. 1. 10. 이종배 · 김선교 · 박덕흠 · 박진 ·
성일종 · 안병길 · 윤영석 · 이종성 · 추경호 ·
태영호 · 홍문표 의원 발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

(2021. 6. 3. 최형두 · 강기윤 · 김영식 · 권명호 ·
정운천 · 태영호 · 김성원 · 이종성 · 박성민 ·
엄태영 의원 발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2021. 6. 3. 진선미 · 김경협 · 김성환 · 김희재 ·
박영순 · 송옥주 · 오영환 · 위성곤 · 이재정 ·
조오섭 · 진성준 · 한준호 · 홍익표 의원 발의)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

(2022. 2. 9. 이현승 · 김승수 · 김은혜 · 김태흠 ·
박덕흠 · 박성민 · 서병수 · 안병길 · 유의동 ·
이양수 · 이주환 · 전봉민 · 하영제 · 황보승희
의원 발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

(2022. 2. 8. 태영호 · 박완수 · 이종배 · 조경태 ·
김영식 · 김정재 · 한무경 · 김승수 · 김석기 ·
박진 의원 발의)

(이상 5건 원안대로 의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

(2021. 6. 23. 권명호 · 유상범 · 엄태영 · 김도읍 ·
송언석 · 이만희 · 최춘식 · 최형두 · 강기윤 ·
구자근 의원 발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2021. 9. 23. 정부 제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2022. 5. 19. 김상훈 · 박대출 · 정우택 · 송석준 ·
김선교 · 하영제 · 지성호 · 송언석 · 배준영 ·
태영호 · 강대식 의원 발의)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

(2021. 4. 7. 김교홍 · 김홍걸 · 박찬대 · 윤관석 ·
김수홍 · 허종식 · 조웅천 · 신동근 · 송영길 ·
소병훈 · 박영순 의원 발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

(2021. 4. 7. 김교홍 · 김수홍 · 김홍걸 · 박영순 ·

박찬대 · 소병훈 · 송영길 · 신동근 · 윤관석 · 조웅천 · 허종식 의원 발의)

(이상 5건 수정하여 의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조웅천 의원 대표발의)

(2021. 11. 25. 조웅천 · 한준호 · 김두관 · 오영환 · 우원식 · 김정호 · 김교홍 · 문진석 · 김민기 · 이용우 · 김철민 의원 발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2022. 5. 19. 김상훈 · 박대출 · 정우택 · 송석준 · 김선교 · 하영제 · 지성호 · 송언석 · 배준영 · 태영호 · 강대식 의원 발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

(2021. 5. 20. 장경태 · 이규민 · 홍성국 · 권인숙 · 김영호 · 조웅천 · 민병덕 · 유정주 · 이용빈 · 한병도 · 김남국 · 홍정민 · 신동근 · 오영환 의원 발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

(2022. 4. 11. 임오경 · 서영교 · 이병훈 · 장철민 · 박상혁 · 이상현 · 오영환 · 이정문 · 신동근 · 박성준 · 유정주 · 최기상 의원 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 발의)

(2021. 1. 19. 홍기원 · 강준현 · 고영인 · 기동민 · 김성주 · 민형배 · 박상혁 · 양정숙 · 윤준병 · 이규민 · 이수진 · 진선미 · 홍정민 의원 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 발의)

(2021. 6. 18. 정찬민 · 김선교 · 김희곤 · 박대수 · 서병수 · 송석준 · 엄태영 · 윤창현 · 이종성 · 이주환 · 지성호 의원 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 발의)

(2021. 7. 30. 박상혁 · 민형배 · 임오경 · 어기구 · 이정문 · 박정 · 서삼석 · 안호영 · 이동주 · 최인호 · 서영석 · 임종성 의원 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 발의)

(2021. 12. 20. 홍기원 · 우원식 · 박영순 · 이용빈 · 김경협 · 천준호 · 최종윤 · 윤준병 · 정일영 · 박홍근 의원 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

발의)

(2021. 12. 24. 윤준병 · 민형배 · 김철민 · 황운하 · 장철민 · 오영환 · 서영교 · 이용빈 · 윤재갑 · 이원택 · 이소영 · 박정 의원 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 발의)

(2022. 4. 7. 박상혁 · 송재호 · 정성호 · 최기상 · 어기구 · 신동근 · 윤후덕 · 서삼석 · 최인호 · 임호선 · 민형배 · 김정호 · 안호영 의원 발의)

(이상 10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20건 국토교통위원장 보고

○청원 제출

명분도 없고 실익도 없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반드시 유예해줄 것에 관한 청원

(2022. 10. 26. 전시환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